연구자료 D135 / 1998. 11 공청희 결과보고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자료정리 및 편집 : 최지현

박준기

머리말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을 경쟁력 있고 환경과 조화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하고, 농업인은 기업가 정신과 전문성을 갖춘 경제주체로 바로 서게하며, 농촌을 산업과 자연이 조화된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 발전시키기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농업·농촌기본법」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객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농업·농촌기본법」(안)에 대한 농업인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고자 공청회와 전문가 간 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책자는 농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농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재 농림부가 제정하려는 「농업·농촌기본법」(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개최된 서울 및 대전지역의 2번의 공청회와 3차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 개최한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의 토의내용은 「농업·농촌 기본법」 제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으며, 그 기록을 정리한 이 책자는 이 분야에 관한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시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토론자 여러분과 공청회 개최를 적 극 지원해준 정부당국, 그리고 자료 정리에 수고해 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1998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상우**

圆廊

목 차

머리말	İ
주제발표 내용	1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3
2. 농업·농촌기본법(안)	47
공청회 토론 내용	71
1. 서울지역 공청회	73
2. 대전지역 공청회	113
전문가 간담회 토론내용	125
1. 1차 간담회	127
2. 2차 간담회	136
3. 3차 간담회	141
트로차기지 며다	145

间廊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서울지역>

1. 일 시 : 1998. 8. 10(월) 14:00-18:30 2 장 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워 대강당

3. 주 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 관 : 농림부

5. 참석자

가. 사 회 자 : 박상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나. 주제발표 : 김정호(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다. 토 론 자 : 김동희(전 단국대 교수)

김완배(서울대 교수)

김재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종수(농협중앙회 조사부장)

조성우(전국농민회총연맹 상임부의장)

황민영(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

<대전지역>

1. 일 시: 1998. 8. 12(수) 14:00-18:00

2. 장 소 : 농협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회의실(6층)

3. 주 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 관 : 농림부

5. 참석자

가. 사 회 자 : 서종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 주제발표 : 이수화(농림부 농업정책과장)

다. 토 론 자 : 김연암(한농연 충남도연합회 사무처장)

민승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서명식(충남 농업정책국장)

성진근(충북대 교수)

이규성(농수산물유통공사 충남지사장)

이길영(전농충남총연맹 사무처장)

이봉주(충남논산 연무농협조합장)

최창균(농어촌진흥공사 충남부지사장)

「농업・농촌기본법」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1차 간담회>

1. 일 시: 1998. 8. 1(토) 15:30-22:30

2. 장 소 : 교육문화회관

3. 주 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 관 : 농림부

5. 참석자

가. 사 회 자 : 성진근 (충북대 교수)

나. 토 론 자 : 권용대 (충남대 교수)

김경량 (강원대 교수)

김완배 (서울대 교수)

김철호 (충남대 교수)

노재선 (서울대 교수)

이태호 (서울대 교수)

이수화 (농림부 농업정책과장)

이정재 (서울대 교수)

서종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조웅재 (식품개발연구원)

조석진 (영남대 교수)

<2차 간담회>

1. 일 시: 1998. 8. 27(금) 15:00-17:30

2. 장 소 : 농업공무원 교육원

3. 사 회 : 서종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4. 참 석 자 : 고영곤 (농협가락공판장장)

권원달 (충북대 교수)

김완배 (서울대 교수)

이수화 (농림부 농업정책과장)

이태호 (서울대 교수)

이호철 (경북대 교수)

장재우 (전북대 교수)

(이상 가나다 순)

<3차 간담회>

1. 일 시: 1998. 10. 12(월) 15:00-19:00

2. 장 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회의실

3. 사 회 : 성진근 (충북대 교수)

4. 참 석 자 : 고영곤 (농협가락공판장장)

김정호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박진도 (충남대 교수)

서종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수화 (농림부 농업정책과장)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찬길 (건국대 교수)

한두봉 (고려대 교수)

주 제 발 표 내 용

间属

공청회자료 1998. 8. 10.

『농업・농촌기본법』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김 정 호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이 수 화 (농림부 농업정책과장)

间随

목 차

I. 기본법 제정 추진 경위	7
II. 농업·농촌여건과 전망	8
Ⅲ. 21세기 농업·농촌의 새로운 과제	11
Ⅳ.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계획	14
V . 농업·농촌기본법(안) 개요	17
VI. 입법추진상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25
<참고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정비방안	31
<참고 2> 국내기본법의 성격 검토	33
<참고 3> OECD 국가들의 과거 10년간 농업정책 동향	34
<참고 4> 각국의 농업기본법 운용사례	37

圆圈

I. 기본법 제정 추진 경위

□ 21세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검토

- '97. 1 : 「농정발전기획단」을 설치, 「21세기 선진농업·농촌실 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97.12)
- '98. 3 : 「농정개혁위원회」를 설치,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건의('98. 7)

□ 입법조사 활동

- '97. 7~'98. 3 :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위해 농업기본법 (1967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제정)등 관련법 검토
 -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의 기본법 조사 · 연구
- '98. 3~6 : 작업반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조문작성 검토
 - 「농업·농촌발전계획」(안), 외국의 기본법 동향 등을 참조하 여 세부 조문작업 추진

□ 관계기관 협의 및 여론수렴

- 공청회 개최 : 2회(서울 8.10, 대전 8.12)
-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 3회(8.1, 8.27, 10.12)
- 농정개혁위원회, 농정포럼 등 회의시 설명(보고): 6회('98.7~9)
- 개별 의견수렴 : 학계원로, 농업인단체 등에 법안 송부하여 의견청취
- 관계부처, 농민단체 의견수렴 : '98. 7.21~8.13
 - 지방단위 의견수렴(시도): '98. 8.14~9. 3
- 입법예고 : '98. 8. 14~9. 3
- ㅇ 규제개혁 심사 완료 : '98. 9. 15

<향후 여론수렴 계획>

- ㅇ 농업관련전문가에 대한 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 농·소·정원로회의, 농정개혁위원회 위원 등

Ⅱ. 농업·농촌여건과 전망

대외적 여건

- □ WTO, OECD 등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각국의 개별 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전망
 - WTO에 제출한 시장개방일정에 따라 품목별로 수입개방
 -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2004년 재협상, 쇠고기는 2001년 개방
 - 차기 협상에서도 AMS 감축과 의무수입량 확대, 무역·관세 인하 등 보호장치 완화(deeper cut)예상
 - 각국이 차기 협상에 대비, 농업정책을 시장 지향, 허용보조정책으로 전환 시도
 - WTO농산물협정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가 강조
 - * 미국은 생산탄력계약지불제(Production Flexbility Contract Payment), 캐나다는 순소득안정화 계정(Net Income Safety Account), 일본도 도작소득안정화 직접지 불 도입
 - OECD의 정책원칙(시장지향, 농업의 다기능성, 농촌개발 등) 에 따라 각국의 정책중심도 이동
- □ 세계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점증되고, 각국별로 식량안보 (Food Security)에 대한 관심 증대
 - 세계식량정상회의(WFS)에서도 식량안보의 중요성 강조 ('96.11)

- 에계인구증가 및 중국의 식량수입국으로의 전환 등 식량불안 고조
 - 세계인구성장율은 년 2%내외로 2010년 72억명 예상('97: 55억)
- 세계곡물시장은 thin market 의 특성을 가지므로 교역량 변화
 에 따른 가격변화가 극심함.

국내적 여건

- □ 국가와 민족형성 및 유지발전에 있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중대
 - 친환경 성격의 농업비중 증가와 이를 매체로 한 소비자와 생산
 자간의 도·농 연대가 강화되고 가족농과 협동조직의 역할이 증대
- □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활용, 교통·정보통신의 발달과 소비자 주권 확대로 농업생산·경영방식 및 유통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전망
 - 식품판매업의 규모화·체인화 및 국내외 신유통업체의 진출로 유통대형화가 촉진되고, 산지의 직거래 확대로 도매시장 비중 감소
 - o "농업도 경영이다"라는 인식 확산과 농업 관련산업(Agribusiness) 발달
 - o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강화되어 고품질·안전농산물 요구 증대
- □ 우리농업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자율농정의 비중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농정 필요성 중대
 - 지자체 중심의 농산물 교역확대와 함께 지역농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
 - 통일대비 농업기술·자재지원 등 단계적 대응시책 마련 필요

- □ 농업·농촌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농업인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정책결정에의 참여 및 지속적인 농촌투자 요구 전망
 - 한면, IMF지원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재원의 확충에 어려움 예상
 - ◆ 국내외적 여건에 부합하는 농업·농촌정책의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틀과 제도의 정비 필요 ◆

Ⅲ. 21세기 농업·농촌의 새로운 과제

<여건변화와 과제 >

- ㅇ 시장개방, 신기술발달 및 정보화로『개방과 경쟁』의 시대 도래
 - ⇒ 농업의 『효율성』과 농업인의 『소득문제』를 조화
- o 국가 형성 및 유지에 있어 농업·농촌의 다기능성 및 복합 기능 중시
 - ⇒ 농업의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과 농촌의 『개발· 보전의 조화』를 통한 쾌적성(amenities)유지
- o 지역농업의 특화와 지자체 역할 증대
 - ⇒ 지역특색에 맞는 농업발전 및 농촌지역 개발 문제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농·소·정의 참여와 협조

1. 향후 농정의 기본과제

- □ 농업은 국가와 민족의 형성 및 유지발전에 있어 최소기본요소 (National Minimum Requirements)
-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능 강화(Food Security)
- □ 농업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 및 농가경영안정 (Structural Adjustment & Stability)

- □ 소비자 지향적인 농정추진(Consumer-Orientation)
- □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업의 다기능성 중시 (Multi-Functionality)
- □ 농촌지역사회발전 및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Rural Community Development)

2. 기본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

- ㅇ 적정 농지면적 확보 및 생산기반의 정비
- 국내생산기반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식량기반 확보 및 해외 농업투자
- ㅇ 통일대비 농업정책

< 농업구조의 효율적 개편 >

- ㅇ 농업경영주체의 체계적인 육성 및 경영혁신 지원
- ㅇ 영농규모 적정화 및 경영자산의 유동성 강화
- o 첨단농업과학기술·실용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보급
- ㅇ 벤처농업의 창업 및 활동 지원
- o 농업·농촌정보화의 촉진
- ㅇ 지리적 표시제 등 지적 소유권의 보호
- ㅇ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농가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

ㅇ 가족농의 경영안정

- ㅇ 농산물 가격안정 및 자조금제도의 확대 도입
- ㅇ 농촌지역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농촌지역에 다양한 산업유치)
- ㅇ 영세농, 친환경농업 등을 위한 다양한 소득지원제도 도입
- ㅇ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강구

< 소비자 지향적인 농정추진 >

- 품질인증제·농산물안전성·농산물 검역 등 품질관리 강화
- o 도·농간 직거래 촉진 및 전통식품개발 지원
- Green Tourism 등 새로운 관광형태의 개발

<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기능성 중시 >

- o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
- ㅇ 유기농 등 친환경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 ㅇ 환경과 조화되는 농촌지역 개발

< 농촌지역사회 유지 발전 >

- ㅇ 농촌지역 산업진훙 및 관광휴양자원의 개발
- o 도·농간 교류확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 농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 o 교육·의료·연금 등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 농업은 경쟁력을 갖춘 종합과학산업, 국토환경, 농촌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공익산업
- · 농업인은 기업가 정신으로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어엿한 경제주체
- · 농촌은 다양한 경제사회 문화활동의 기반으로서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지역사회

IV.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계획

< 여건변화와 과제 >

-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21세기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법제화하여 앞으로의 농정방향과 이념을 제시
 - 법 제정과정에서 농업인 및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 o 선언적·방침적 규정과 구체적·집행적 규정을 동시에 포함

1. 기본법의 역할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영농주체, 소비자 등에게 앞으로의 농정추진방향을 제시하는 Guideline 역할 수행
 - ㅇ 농정의 비전제시와 Guideline 역할 수행
 -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전환 유도
 - > 농정개혁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제시되어 관련 입법·제도·예산조치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
 - 농업분야 53개 법률의 기본이 되는 헌법적 역할 수행
- □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해 21세기 농업·농촌 육성·발전방향에 대한 Consensus를 형성
 - > 농정개혁위원회,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과정 등을
 통해 농업의 역할과 기능,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가능
 - 농정개혁 추진 과정에서 추진력으로 작용

2.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의 기본원칙

□ 농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기존 관련법을 조화롭게 정비

- 농업기본법은 선언적・방침적인 성격이 강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집행법적 성격이 강함(과거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법제화).
- 양자의 성격을 조화하여 농업·농촌발전 기본방향과 구체적·실 효성 있는 조항을 동시에 포함하는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 우리나라의 농업발전단계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규정·반영
 - 기존의 농업기본법(196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은 증산 중심의 농정시대, 가격지지 등 농업보호·수입제한시대에 제정 되어, 법 정신상 무한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다수 포함

□ 21C 새로운 농정과제에 대한 시책의 근거 마련

- ㅇ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 ㅇ 직접지불제도 등 농가소득지원 확대
- 생산·유통·품질·안전성 등 종합적 경쟁력 강화 ·
- ㅇ 농업통상협력 강화 및 통일농정 적극 전개
- ㅇ 벤처농업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 o 농·소·정 협력, 지방농정 활성화 등 농정추진체계 개편

□ 농림분야 개별법의 존재여부에 따라 조문 성격을 다르게 규정

- ㅇ 농안법,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법이 있는 경우
 - 기존 농발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관하여, 관련법을 정비하고 기본법에는 정책방향만 언급
 - 농발법에 규정된 사항도 조문별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새로운 정책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입법 조치

- ㅇ 인력, 기술, 정보 등 개별법이 없는 경우
 -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제정하여 실효성을 높임.
- 개별법에 규정될 구체적인 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시되는사항은 기본법에 규정
 - 농지전용부담금,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유통명령제 등

□ 국내외 기본법 입법경향이 실용주의화하는 추세 감안

- 환경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등 18개 기본법은 시행령이 있는 집행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광기본법등 2개는 시행령이 없음.
- ㅇ 외국의 기본법의 경우도 구체적 시책을 포함하는 추세임
 - 프랑스의 경우 국가와 개인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영영토계약(CTE)」 등 구체적 시책을 다수 포함
 - 미국의 경우 구체적인 시책과 예산지원까지를 포함하는 구체적 내용임.
 - 그 동안 선언적 내용중심의 일본기본법도 중산간지역 직접지 불제, 농업회사의 농지소유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의 포함을 논의중임.

	<한국농업 발전단계>	
-	<u>목 표</u>	<u>전 략</u>
1970년대	식 량 증 산	녹색혁명, 가격지지
1980년대	소 득 증 대	농외소득원 개발
1990년대	경쟁력 제고	구 조 개 선
2000년대	경쟁력+농업의 다기능	구조개선과 사회안정
		기능지원

V. 농업·농촌기본법(안)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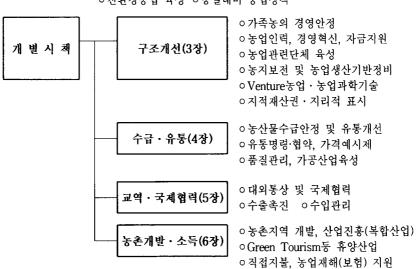
1. 농업·농촌기본법(안)의 쳬계(총 8장 52조)

총칙(1장)

- ㅇ농업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 농촌생활환경과 복지수준의 향상
- ○농업 경쟁력있고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
- 농업인 타산업 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 농촌 -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산업·생활공간
- o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기본시책(2장)

- ㅇ정책의 기본원칙 ㅇ식량의 안정적 공급 ㅇ농업구조개선촉진
- ㅇ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문화의계승, 도·농간 통합개발
- ○친환경농업 육성 ○통일대비 농업정책



발전계획(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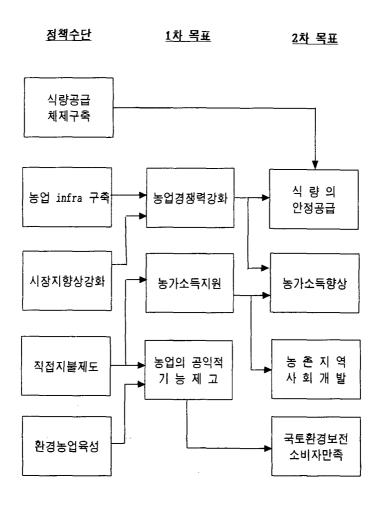
○ 중앙 및 지방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농정심의회 ○계획의 평가 및 효율적 추진 ○연차보고서작성

보 칙(8장)

o준농촌지역에대한 지원 o조세의 감면 등

2. 농업ㆍ농촌기본법(안)의 주요내용

<정책수단과 목표와의 연계>



[주요내용 (요약)]

< 총칙 및 기본시책 >

- □ 정책대상의 다양화(제2조 : 기본이념)
 - 책의 목표를 농업·농업인·농촌으로 광범위하게 규정, 명확화
 - 농업 · 농업인 · 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
- □ 농업인의 책무(제4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 > 농업인을 정부의 시혜대상이 아닌 어엿한 경제주체로 파악하여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응한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
- □ 정책의 기본원칙(제5조 : 기본원칙)
 - ㅇ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을 명확화
 -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농업의 외부경제효과를 고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개입근거를 마련
- □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개념의 도입(제6조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 ㅇ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개념을 법상 명확히 도입
- □ 환경친화적 농업육성 근거마린(제9조 :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 농업의 환경보전효과, 고품질농산물 공급 등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기본시책으로 규정

□ 통일을 대비한 농업정책 규정(제10조 : 통일대비 농업정책)

 농업의 통일에의 기여방안, 통일에 대비한 시책수립 등을 규정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함.

< 농업구조개선(제3장) >

□ 농업인력육성 및 경영혁신

- ◇ 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과의 연계(제17조 : 농업인의 경영혁신, 제18조 : 자금의 효율적 지원)
 - 농업인을 「경영인」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경영상담·자문 등을 통한 경영혁신과 이와 연계된 자금지원 등을 규정
 - 무조건적인 자금지원을 배제하고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전제로 한 자금의 종합적 지원으로 민간경영기법 및 계약 개념을 도입

□ 농업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촉진

- ◇ 벤처농업 육성을 위한 근거마련(제28조 : 벤처농업 등의 육성)
 - 농업분야 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농업관련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벤처농업 육성·지원근거를 마련
-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제29조 :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
 - 농업을 과학·장치산업으로 인식하고 유전자원(GMO등), 기술, 지식, 상표 등의 지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마련
 - 지역 특화산업 육성·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 실시 근거 마련

<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제4장) >

- □ 유통협약·유통명령 등 새로운 시책의 도입(제34조 :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등)
 -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예시 농·소·상·정 유통협약 및
 산지폐기 등 유통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농산물 교역 및 국제협력(제5장) >

- □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의 원칙 규정(제38조 :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 o 국내외 농업여건·농업정책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 수립근거 마련
 -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이익증진을 위하여 인력·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의 근거마련
- □ 해외농업개발 실시근거 마련(제38조 :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 식량공급・국제협력을 위한 농업투자환경조사 등 해외농업
 투자 개발의 근거 마련

< 농촌개발 및 농촌주민 소득지원(제6장) >

- □ Green Tourism 개념 도입(제42조 : 농촌지역산업진흥 및 관광휴양자원 개발)
 - 외국의 지역관광 추세를 감안, 도·농간 교류확대, 지역의 특색을 살린 현장체재형 관광개발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 직접지불제 실시(제43조 :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에계적인 농업정책동향에 부응하기 위해 WTO상 허용된각종 직접지불제도의 국내도입 근거마련

<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추진(제7장) >

- □ 농정심의회 설치·운영(제47조 : 농정심의회)
 - 농업기본법상 농업정책심의회, 농발법상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합, 중앙·지방 농정심의회 신설
 - 농정심의기구의 단일화 및 효율적 운영체제 구축
- □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48조 : 농업·농촌계획의 효율적 추진)
 - o 중앙·지방계획의 연계성, 계획수행정도를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지원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 마련
- □ 지자체의 연차보고서 작성의무(제49조 :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 o 중앙정부의 연차보고서 작성의무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연차 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 지역 농정의 monitoring체제 강화

< 참고 > 농업기본법(1967제정)과의 차이점

구 분	농업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	
구성성격	6장30조 선언적 규정	8장52조 선언적 규정(총칙, 기본시책) + 집행적규정(인력,과학기술)	
제정배경 주요내용	식량증산, 가격지지(자급체제) ○농업생산성향상,농업생산증대 ○농산물가격안정, 유통개선 ○농업구조개선 - 가족농·기업농육성 - 생산기반정비 - 축산·산림대책 ○농촌복지・문화향상 ○농업정책심의회	시장개방, 경쟁강화(개방체제)	
법의실효성	○死文化 - 농정심의회, 연차보고서만 운용	○인력·과학기술분야 구체화 - 기타 시책은 선언적 규정만 포함하고 농지법·정비법 등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 정	

3. 농업·농촌기본법과 농업분야 주요 법률과의 관계

총 칙(1장)

- 농업기본법

구조개선(3장)

농업인력육성 농업관련단체육성 농지의 보전·이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협법, 축협법

생산기반정비·시설현대화 - 농업기계화촉진법.

- 농지법,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과학기술·정보화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촌진홍법

수급유통(4장)

수급안정·유통개선

- 농수산물유통및가격

안정에관한법률

품질관리·가공산업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처리법

교역·국제협력(5장)

대외통상 수출진홍

- WTO이행특별법

-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촌개발 복지(6장)

산업진흥·휴양자원

- 농어촌정비법

직접지불

- WTO이행특별법

농업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발전계획(7장)

중앙·지방계획 농정심의회·연차보고서 - 농업기본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인삼산업법, 잠업법, 축산법, 낙농진홍법 등 개별품목에 관한 법은 제외

VI. 입법추진상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1. 기본법의 체제 및 성격 관련

기본법은 선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해야 하고, 구체적· 집행적 내용은 개별법에 위임해야 하나, 성격이 다른 농업기 본법·농발법을 통합하여 법의 성격이 모호해진다는 의견

- □ 「농업·농촌기본법」이 선언적 규정을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 1967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이 선언적인 규정을 내용으로 제정된 후 死文化된 점을 고려할 때, 여타 기본법,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의 농업·농촌기본법은 총칙(1장)·기본시책(2장)에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한 후, 3장 이후에 분야별 시책을 담고 있어 양자 를 포괄할 수 있으며,
 - 전문가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집행적 성격의 조문을 최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였음.
 - * 세부내용 조항으로 비판이 많이 제기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총리실과 계속 협의중에 있어 결과에따라 조치

□ 우리나라의 다른 기본법 예를 볼 때

o 20개 기본법 중 18개 법률이 시행령을 제정하여 집행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참고2 참조)

- 환경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등은 시행령이 있으며, 관광기본법 등 2개법률은 시 행령이 없음.

□ 외국의 농업기본법의 경우에도 실용주의적인 경향을 반영하여

- 프랑스의 경우 국가와 개인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영영토 계약(CTE)」등 구체적 시책을 다수 포함
- 미국의 경우 한시적이지만 예산지원까지를 포함하는 구체적 내용임.

2.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 여론수렴결과 보완 사항

목적 - 기본이념 - 기본원칙 관련

- 농업·농촌기본법은 중장기적인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규정한 법이므로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전문가토론회).
 -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과의 연계, 농업인의 타산업 종사 자와 균형소득실현문제 등을 포함 1, 2조를 재구성
- ㅇ 입법체계를 목적-기본이념-기본원칙으로 구성, 조문을 체계화
 - 제1조(목 적): 간결하게 기본법의 입법취지만을 규정
 - 제2조(기본이념) : 농업, 농업인, 농촌의 미래상(바람직한 모습) 을 규정
 - 제5조(기본원칙) : 시장경제 원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

농업회의소·농림수산정보센터 관련조항 삭제 관련

o 법 성격상 개별기관의 설립근거·운영·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바람직 하지 못하므로 총괄적인 정책방향만 규정(전문가토론회, 공청회)

- 농업회의소 관련조항은 제19조(농업관련단체의 육성)중 일부로
 포함하여 개별적인 성격을 완화하고,
 - 농림수산정보센터 관련조항은 삭제하고 지원근거만 신설

「농업인의 책무」조항 삽입 관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응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농업인의 역할을 규정한 「농업인의 책무」조항 신설(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로 수정하고 농업인의 책무를 별도의 항으로 신설
 -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생산성 향상·경영혁신 등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등을 규정

「농업·농촌발전계획」부분 삭제 관련(45,46,48조)

- 농업이 기본적으로 지방(local)문제이고, 특히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 수립으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 특색에 맞는 시책수립과는 거리가 있음(전문가토론회)
- 중앙정부의 총괄계획수립 및 방향설정 기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시책도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수 행되어야 하므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은 필요(공청회)
 - 구체적인 조항은 삭제하고 방침적·선언적 조항만을 규정, 조문을 대폭 간소화하여 정리

기타 관련조문 조정 및 단순화

- ㅇ 법인경영체 관련 조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문을 기본법 성격에 맞게 대폭 간소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리
- ㅇ 농업인의 경영혁신 관련 조문
 - 제15조(전업·귀농 및 교육훈련지원)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혁신 관련 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
 - 제18조(자금의 효율적 지원)도 종합자금제도 관련 내용을 중심 으로 단순화
- ㅇ 농산물유통개선 관련 조문
 - 제35조(농산물유통개선)를 ①유통시설확충(hardware) ②유통 시설운영제도개선(software) ③유통조성체계(supporting system) 로 분리 규정
- ㅇ 농산물재해 관련 조문
- 제44조(농업재해에 대한 시책)에 재해보험, 공제 등의 시책강구를 규정

3. 기본법 제정의 절차 및 새로운 정책의 실시 관련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

□ 여론수렴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는 1997년 「농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중장기 농정발 전방향을 검토해 왔으며, 1998년에는 「농정개혁위원회」를 설 치·운영하여 신정부의 농정방향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 내용 을 포함하여 기본법 시안을 마련

- 시안 작성이후도 관계부처 협의와 병행하여 공청회(2회), 전 문가토론회(3회), 농정심의회를 거치는 등 계속 여론수렴과 정을 거쳐 수정·보완중임.
 - * 향후 전문가, 원로들의 의견수렴 등을 계속할 계획임.

□ 또한,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벤처농업, 통일대비농정 등 새로운시책에 대한 법적근거의 조속한 마련 필요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어촌발전대책의 법제화라는 측면
 이 있으므로 42조 사업이 마무리되는 금년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합함.
 - 농정개혁위원회에서 수립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의 법제화 작업도 현 시점에서 이루지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함.
- 농업·농촌기본법은 법안 작성도 1년이상 준비하였고,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2000년 1월에 시행되게 되므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필요가 있음.

4. 농업기본법·농발법 존치와 관련

기존의 농업기본법·농발법 체제를 유지하고, 이를 현재 상황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기본법(1967제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 이 법이 식량증산·가격지지정책이 농정의 주요 시책이었던 상황에서 제정되어 현재 상황과 크게 괴리되어 있어 부분개정이 의미가 없고(전면개정은 신규제정과 유사함),
-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이므로 다시 死文 化될 소지가 많아 실익이 적음.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제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 이 법이 「농어촌발전종합대책」(42조사업)시행을 위한 限時法
 的 성격을 가지고 있어 42조사업이 끝나는 금년말에는 입법 취지상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 현재 농발법 조문의 50%이상의 타법으로 이관되었거나 이관 추진계획이고,
 - * 농지법, 농어촌발전특별회계법등 다른 법으로 승계 규정된 조항: 19개
 - * 총칙, 어업구조개선, 수입자유화 예시 등 불필요해진 조항 : 15개
 - * 농어촌정비법, 농안법 등으로 이관, 법체계를 정비 예정 조항 : 12개
- 현행 존치가 필요한 조항은 관계 법령을 갖고 있지 않은「인력육성,기술개발, 농촌계획」조문에 불과하므로 개정의 실익이적음.
- □ 따라서 개정실익이 적은 두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두 법률을 조화롭게 정비하여 살아 움직이는 법으로 만들고자 함.

< 참고 1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정비방안(총9장78조)

<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 : 9개조문

- ㅇ 인력육성(전업농, 후계자, 영농법인)
- 농업기계화 및 기술개발, 경영정보 (6개조문

< 농림수산물의 수급안정 > : 8개조문

- 관측, 자조금, 가공지원 등(4개조문) → 농안법에서 구체화(기본법 5개조문)
- 수출촉진, 수입자유화 예시(4개조문) → 불필요 조항 삭제 (기본법 1개조문)

< 농외소득원개발 > : 12개조문

 ○ 농외소득, 농공단지, 특산품 →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기본법 1개 조문)

< 농어촌정주권개발 > : 8개조문

○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

< 농업진흥지역지정·운영 > : 9개조문

- 농업진홍지역 지정 → 농지법(1996.1 기승계)
- 농업용수 →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

- <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 : 5개조문
 - 농어촌발전계획수립 및 변경 등 → 기본법 이관(3개조문)
- < 농어촌발전기금 > : 13개조문
 - 농어촌발전기금운용 등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1994.1 기 승계)
- < 보 칙 > : 12조문
 - 준농어촌지역, 보고검사, 조세감면 등 → 불필요 조항 삭제(기본법 2개조문)

< 참고 2 >

국내 기본법의 성격 검토

법 명	법조문	시행령	시행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101조	89조	39조
2. 고용정책기본법	32조	26조	5조
3. 관광기본법	15조	-	-
4. 교육기본법	29조	-	-
5. 국세기본법	86조	66조	37조
6. 기금관리기본법	13조	8조	-
7. 민방위기본법	34조	38조	62조
8. 사회보장기본법	35조	14조	-
9. 여성발전기본법	36조	35조	-
10. 영상진흥기본법	16조	7조	_
11. 자격기본법	35조	21조	-
12. 전기통신기본법	53조	34조	37조
13. 정보화촉진기본법	36조	32조	14조
1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9조	17조	_
15. 중소기업기본법	22조	9조	-
16. 직업훈련기본법	50조	29조	27조
17. 청소년기본법	76조	75조	46조
18. 해양개발기본법	24조	26조	-
19. 행정규제기본법	37조	31조	_
20. 환경정책기본법	41조	34조	_

^{*} 총 20개의 기본법중 순수한 의미의 기본법은 관광기본법, 교육기본법 정도이며 그 외는 대부분 집행적 성격의 조문을 포함하고 있음.

< 참고 3 >

OECD 국가들의 과거 10년간 농업정책동향

---<농업개혁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

시장지향성(market-orientation)의 향상과 지지수준의 감축

① 무역자유화의 진전

- o UR 농산물협정의 이행은 '95년 이후 국내정책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었음
- 개방에 대한 국내·국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정책 개혁 추진
- o 무역자유화에 대하여 식량수입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Food Security)문제 제기

② 직접지불제로의 전환

- 생산 또는 생산요소와 관련되지 않고 농업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면서 지지수준의 감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단.
- 최근 환경(친환경 직접지불), 농촌개발(영세농지원, 조건불리지역)과 관련, 농업의 다양한 역할들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

③ 전후방, 특히 후방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 기초생산분야와 전·후방 연관분야는 통합이 확대되고 가공농 산물 무역이 총 농산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 농업정책에 있어서 후방연관효과(가공·유통, 수출 등)의 작용을 재인식

- ⇒ 기초생산분야에 대한 정책도 후방연관산업에 대한 고려없이는 효과 약화
- ⇒ 생산만을 목적으로 한 정책의 재검토(Policy-mix)
- ㅇ 식품안전정책, 관리 및 점검체계를 개발하는 정책 강화

④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

- 유익한 환경적 효과를 높이고 해로운 환경적 효과를 줄임으로
 써 농업의 환경적 역할을 개선하고, 자원이용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 ㅇ 일부 국가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incentive로서 직접지불제 시행
- ※ OECD Seminar(농업의 환경적 편익, 1996. 9. Helsinki)
- 농업의 지속가능성, 환경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시에는 환경에 대한 농업의 正 (+)의 효과와 負(-)의 효과를 모두 고려 해야 함.
- 환경정책의 재원마련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 (PPP: Polluter -Pay-Principle)적용.

⑤ 구조조정 지속

- 농가수준의 구조조정은 노동력의 유출, 경영규모의 확대, 기계화 등을 통하거나 농민소득원 또는 농가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
- 전방 및 후방연관 분야는 농가수준의 경영과 더욱 통합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의 농업 식품 system의 모든 단계에서 집중 심화
- o OECD 국가의 경험결과 농업분야에서 노동의 유출을 막기 위한 생산관련 정책들은 실패했다는 것이 명백
- 농가들을 농업/농촌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수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 및 농업부문보다 농촌 개발에 대한 정 책이 필요

구조조정 프로그램중 조기은퇴제도, 교육 및 재훈련 등은 중요성이 확대

⑥ 농촌의 복합사업지역화 강화

- 농촌개발과 농촌의 생존능력은 농업·농촌정책에만 의존하지 않음.
- 장기간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요구
- 생산과 관련된 지지에 대한 정책은 농촌개발·농촌생존능력 향상을 달성할 수 없음.
- ※ 최근 많은 국가에서 농무부의 활동을 지방으로 분산
- 생산과 관련된 정책수단으로부터 더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가 농촌지역개발의 핵심적 요소임.

< 참고 4 >

각국의 농업기본법 운용사례

일 본

1. 농업기본법의 성격

- 일본의 농정추진방식은 농업기본법(1961)의 의한 정책방향과 이념하에서 개별법에 의하여 추진
 - 농업법률체계는 농업기본법과 개별 법·시책 등으로 구성.
- 농업기본법은 농정의 이념과 시책의 기본원칙·방침을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추상적으로 규정
 - 농업에 관한 憲章, 즉 농업헌법과 같은 성격의 법률임.
-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시책의 구체화는 별도의 입법・예산조치에 맡겨졌고, 농업기본법은 농업에 관한 각종 시책의 범위를 규정 하여 유도하는 기능 수행

2. 법률의 주요내용(전문 및 6장 36조로 구성)

- ㅇ 농업정책의 목표 및 시책
- ㅇ 생산정책의 과제 및 시책
- ㅇ 농산물가격 및 유통정책의 과제 및 시책
- ㅇ 농업구조정책의 과제 및 시책
- ㅇ 농업행정기관 및 농업단체의 개편
- ㅇ 농정심의회의 설치 등

3. 농업기본법의 농정상의 역할

- 국가의 농정 목표와 수단에 관한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중앙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에 지침 기능 수행
- 기본법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가의 시책에 대해 연차보고서 등을 통하여 정책목표의 실현을 점검

프랑스

1. 농업기본법의 체계

- 프랑스의 농정은 「농업법전」과「농업기본법」등 2가지 법률로 운용
- 「농업법전」은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의 법률을 하나의 법전 형식으로 종합한 것이며, 1791년 「농업법전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55년에 전8편 1,337개조로 집대성한 법률임.
- 50년대의 고도성장하에서 농업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60년 「농업기본법」을 제정, 구조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농업기본법의 경과

가.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1960년 농업기본법) (Loi d'orientation agricole, 1960)

ㅇ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SAFER)를 설치, 농지유동화를 추진

나.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의 보완법(1962년 보완법) (Loi complétant loi d'orientation agricole, 1962)

○ 「농업구조개선사회기금」(FASASA)을 설치, 이농·전직을 장려

다.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1980년 농업기본법) (Loi d'orientation agricole, 1980)

○ 공통농업정책(CAP)의 제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책전화

라. 농업근대화법(1995년 농업기본법)

(Loi du modernisation agricole, 1995)

공통농업정책의 규칙과 역내 우선 정책의 원칙을 준수하고,
 동시에 국제적 약속을 농정에 반영하여 농정의 목적·방향,
 시책을 제시

3. 농업기본법의 성격

- o 국가발전에 있어 농업·농촌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立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기본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열거
 - ⇒ 국가와 농업부문간의 사회적 계약이라는 성격을 가짐.

<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기본법 변화추이 >

구 분	여 건 변 화	주 요 내 용
'60/'62 기본법	○ 내부 : 도·농간 소득불균형의 확대 ○ 외부 : 공동농업정책(CAP) 실시에 따른 내부체제 정비	
'80기본법	농업의 고용유지 기능 부각 ㅇ외부 : CAP의 시장가격지 지에 따라 지역간농	업자의 영농정착 지원강 화에 법률개정의미 부여

4. '98년 농업기본법 개정(1998. 6 프랑스 하원 접수내용)

가. 농업기본법 개정여건

< 외부여건 >

○ WTO의 새 무역협상을 앞두고 농업정책의 목표와 방식을 EU 차워에서 새로이 정비

< 내부여건 >

- o CAP가격지지에 따른 지역간 농업발전의 불균형 심화
 - 농촌의 공동화(Safety Net파괴), 환경오염문제 야기
- ㅇ 生産主義 일변도의 집약화로 농산물 안전성 문제 심화

나. 개정 농업기본법의 주요내용 (목표)

- 기본목표 : 농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기능의 조화 -
 - 농업정착 활성화, 농업경영체의 지속성 유지, 농업부문의
 고용유지 및 개발
 - 농업생산환경개선, 농가소득개선 및 비농업분야와의 사회보장의 형평성
 - ㅇ 농산물 수요변화에 대응한 생산의 다변화 및 안전성
 - ㅇ 농업생산자, 가공업자, 유통기업간 가치분배의 균형 도모
 - ㅇ 농업생산시스템에 적합한 품목의 생산
 - ㅇ 자연자원의 보존과 경관의 유지
 - ㅇ 농촌 공간 이용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 <경영영토계약(CTE)> -

경영체의 생산조건과 자연자원의 보존, 공간이용,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경영체의 활동을 고려해 행정기관(도)이 정한 경 영체육성 기본방향과 부합될 경우 경영체와 계약을 맺고 지원

미 국

1. 농업법의 성격

- 미국의 농정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시책을 일원화한 「단일 법률」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임.
 - 「농업법」(Farm Bill)이라 불리는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중점적・일체적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
- > 농정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한 「기본법」과 구체적인 시책을 규정한 「개별법」의 체계로 추진되는 프랑스 및 일본 방식과는 달리 한시적인 특별법적 성격을 가짐.
 - 개별 정책에 대한 규제력을 가지는 실체법적 성격

2. 농업법의 경과

- o 20년대 농산물의 생산과잉에 직면하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제정
 - ①생산조정제도, ②농산물을 담보로 한 가격지지 융자제도, ③지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패리티가격제도 등을 농정에 도입
- 「'38년 농업조정법」과 「'49년 농업법」이 항시법으로 남아 있는

- 가운데, 이 법률의 효력을 대체하는 법률, 즉「농업법」(Farm Bill)을 제정하여 일정기간 농정의 추진을 반복하고 있음.
- 「'96년 농업법」(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Reform Act: FAIR Act)은 「'90년 농업법」('95.12.시효)이 만료한 이후 인 '96.4에 제정('96~2002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3. 1996년 농업법의 내용

1996 농업법의구성(9개장)

- ㅇ 농산물시장 전환 정책(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ct)
- ㅇ 농산물 교역 정책(Agricultural Trade)
- o 환경·농지보전 정책(Conservation)
- 영양지원 정책(Nutrition Assistance)
- ㅇ 농업증진 정책(Agricultural Promotion)
- ㅇ 농업신용 정책(Credit)
- ㅇ 농촌개발 정책(Rural Development)
- ㅇ 연구·지도 및 교육정책(Research, Extension and Education)
- o 기타(Miscellaneous)

□ 농가소득 지지정책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대폭 개편

- o 과거의 부족불지불제(Deficiency Payments : Blue Box)를 폐지하고 생산탄력계약지불제(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ayments : Green Box)를 채택
 - 생산자는 '96~2002년까지 정부와 7년간 생산자율계약을 체결하고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매년 보조금을 지급

- 대상작목 :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면화(7개 작목)
- 보조금은 등록된 계약면적에 근거하여 산정하되, 현재의 식부 면적과는 관계되지 않음으로써 Green Box요건을 충족
 - * '97년 미국의 가격·소득지지정책에 대한 총 재정지출액중 생산탄력계약지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달함.

□ 기타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제도 수정

- 나농품 가격지지 점진적 축소, 유통부과금징수 철폐, 유통명령
 제도 통합 및 개혁
- 설탕 유통할당제도 유보, 유통부과금 확대, 융자제도를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에 따라 조정(TRQ 물량초과시 비상환성 융자 실시)
- 땅콩에 대해서는 최소 국내쿼터 제도를 없애고,쿼터 땅콩에 대해 융자율을 낮추며, 연방정부 예산지출을 상쇄시키기 위한 부과금 증액으로 순비용 손실이 없도록 정책 운용

□ 무역지원 규정의 효율화

- 미국의 곡물수출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집중시키기 위한 수출촉진전략 수립
- ㅇ 새로이 부상하는 시장에 집중지원
- ㅇ 고부가가치 농산물 강조
- ㅇ 재고보유와 판매를 규제하는 CCC규정 완화
- 시장확대계획(Market Promotion Program)을 시장접근계획
 (Market Access Program)으로 개칭하고 지원자금 축소
- ㅇ 식량안보 밀 비축제도를 식량안보 곡물 비축제도로 대체
- o 초기년도에는 EEP 예산을 감축

□ 환경보전 정책을 통합하고 확대

- o 환경보전촉진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을 도입, 작물과 축산물 생산자에게 비용분담 및 기술지원계획으 로 통합
- CRP권한을 확대하고 등록을 고정시키며 일부 CRP계약을 조기 종결하고 새로운 경지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생산자가 경지보전준수 및 습지보전 규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축성을 부여받음.

圆圈

국무회의자료 1998. 11. 20

農業・農村基本法(案)

间廊

1. 議決主文

農業・農村基本法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開放·競爭時代에 대응하여 우리 農業의 競爭力을 높이고 公益的 기능을 강화하여 農業을 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과 國土環境保全 등에 이바지하는 國家基幹産業으로 발전시키며, 農業人을 다른 産業從事者와 균형된 所得을 實現하는 經濟主體로 成長시켜 나가는 한편, 農村을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産業・生活空間으로 發展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農業・農村政策의 기본적인 방향을 設定함으로써 모든 農業・農村關係法의 기본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이 法案과 중복이 되거나 實效性이 없는 農業・農村關係法律을 整備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 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안정적인 成長과 발전, 農村地域開發 등을 위한 綜合的인 施策을 수립·施行하고, 農業人은 農業·農村의 發展主體로서 農産物의 안정적 供給 및 經營革新 등을 통하여 國家發展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國家·地方自治 團體 및 農業人의 責務를 정함(案 第4條).
- 나.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經營의 안정을 도모하고 生産性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家族農・後繼農業人・專業農業人・女性農 業人・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을 육성하는 施策을 수립 ・施行하도록 함(案 第11條 내지 第16條).
- 다.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의 經營革新을 위하여 農業經營 相談·教育訓練 및 資金支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農業人 의 權益保護와 經濟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 農業關聯團體를 육성하도록 함(案 第17條 및 第18條).

- 라.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先進化·尖端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農業科學技術의 振興, 벤처農業의 육성, 農業關聯 知的財産權의 보호 및 農業의 情報化 등을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하도록 함(案 第25條 내지 第29條).
- 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需給安定 및 流通改善을 위하여 生産調整, 流通施設의 확충 및 그 운영개선, 農産物의 包裝・規格化 등 物流의 標準化를 촉진하는 施策을 수립・施行하도록 함(案 第30條 및 第31條).
- 바. 政府는 農産物의 輸出振興과 農業分野에서의 國際協力의 增大 를 위하여 海外市場開拓, 貿易情報의 蒐集·제공 및 農業人力 ·技術의 交流 등 필요한 施策을 마련하도록 함(案 第34條 및 第35條).
- 사. 農業基本法, 農産物價格維持法 및 農水産物輸出振興法은 이를 廢止함(案 附則 第2條).

4. 主要討議課題

없 음

5.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생 략

나. 豫算措置: 別途措置 필요없음

다. 合 議: 財政經濟部・統一部・行政自治部・産業資源部 및

豫算廳 등과 合議되었음

라. 기 타 : (1) 立法豫告(1998. 8. 14 ~ 9. 3)결과, 特記할 사항 없음

(2) 規制審査: 規制改革委員會와 協議결과, 新設・强化되는 規制 없음

農業・農村基本法案

第1章 總 則

- 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와 國民經濟의 基盤인 農業과 農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業・農村이 나아갈 방향과 國家의 政策方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基本理念) 農業은 國民의 食糧을 안정적으로 供給하고 國土環境保全에 이바지하는 등 經濟的·公益的 기능을 수행하는 基幹産業으로서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의 基盤이 되도록 하고, 農業人은 自律과 創意를 바탕으로 다른 産業從事者와 균형된 所得을 실현하는 經濟主體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農村은 固有한 傳統과文化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産業・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이를 未來世代에 承繼되도록 한다.
-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 1. "農業"이라 함은 農作物生産業, 畜産業, 林業 및 이들과 관련된 産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3. "農業經營體"라 함은 農業人,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 人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 4. "生産者團體"라 함은 農業生産力의 增進과 農業人의 權益保護를 위한 農業人의 自主的인 組織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 5. "農村"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 6. "農産物"이라 함은 農業活動에 의하여 生産되는 農作物・畜産物 ・林産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産物을 말한다.

- 第4條(國家·地方自治團體 및 農業人의 責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農村地域開發 등을 위한 綜合的인 施策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할 實務를 진다.
 - ②農業人은 農業・農村의 發展主體로서 品質좋고 安全한 農産物을 안정적으로 生産・供給하고 生産性向上과 經營革新 등을 통하여 國家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農業・農村施策의 基本方向

- 第5條(施策의 수립・施行의 기본원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 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市場經濟原理를 바탕으로 한 효율 성을 추구하되, 農業의 公益的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 第6條(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이 國家의 건전한 발전과 國民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필수적인 要素임을 認識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食糧自給水準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第7條(農業構造改善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生産 ·流通 등 綜合的인 農業構造의 개선을 통하여 農業의 競爭力을 높이고 農業人의 所得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第8條(農村地域開發 및 福祉增進)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을 都市와 連繫된 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農村의 快適性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地域의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전 · 계승하고 農村住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第9條(環境親和的 農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環境 保全機能을 增大시키고 安全한 農産物의 生産 및 消費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環境親和的인 農業을 육성하여야 한다.
- 第10條(統一對備 農業政策) ①政府는 統一에 대비하여 北韓의 農業生

産體制, 農地 및 農産物流通制度 등에 대한 調査·研究를 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南北韓間의 農産物去來는 民族內部去來임을 인식하고 南北韓間 農業部門의 相互交流 및 協力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章 農業構造改善

第1節 農業人力의 育成

- 第11條(家族農의 경영안정) 政府는 家族勞動力을 主軸으로 한 家族農의 生産性向上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家의 특성에 맞는規模化·專門化·協同化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하다.
- 第12條(後繼農業人의 육성) 農林部長官은 미래의 農業人力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農業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者를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後繼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 第13條(專業農業人의 육성) 農林部長官은 專門農業技術 및 經營能力을 갖추고 農業發展에 中樞的이고 先導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農業人을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 第14條(女性農業人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政策의 수립 ·施行에 있어서 女性農業人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女性農業人의 地位向上과 專門人力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第15條(營農組合法人의 육성) ①協業的 農業經營을 통하여 生産性을 높이고 農産物의 出荷・加工・輸出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農業人은 5人이상을 組合員으로 하여 營農組合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 ②營農組合法人은 法人으로 하며,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③營農組合法人은 農業人과 農産物의 生産者團體중 定款이 정하는 者를 그 組合員으로 하되, 組合員이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 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農組合法人에 出資하고 議 決權이 없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 ④營農組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團體의 組合員 또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 ⑤商法 第176條의 規定은 營農組合法人의 解散命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法院에 營農組合法人의 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
- ⑥營農組合法人의 設立・出資・事業・定款記載事項 및 解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6條(農業會社法人의 육성) ①企業的으로 農業을 경영하거나 農産物의 流通·加工·販賣를 하고자 하는 者 또는 農業人의 農作業을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 ②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는 者는 農業人과 農産物의 生産者 團體로 하되, 農業人이 아닌 者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의 범위 안에서 農業會社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 ③第15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 用한다.
 - ④農業會社法人의 設立・出資 및 附帶事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⑤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17條(農業人의 經營革新 및 資金支援)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이 지속적인 經營革新을 통하여 所得을 높일 수 있도록 農

- 業經營의 相談・諮問, 教育訓練 및 情報提供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②政府는 農業經營體에게 그 事業計劃, 技術水準 및 經營能力 등을 고려하여 農業分野의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 第18條(農業關聯團體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의 權益을 보호하고 經濟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 生産者團體 및 農業人團體 등 農業關聯團體의 設立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第2節 農地의 이용 및 보전

- 第19條(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農地는 國民食糧의 안정적인 供給 및 環境保全을 위한 基盤이며 農業과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에 영 향을 미치는 귀중한 資源으로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 第20條(農地의 所有와 이용)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憲法상 耕者 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農地의 所有 등에 관한 施策을 수 립·施行하여야 한다.
 -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農業과 國家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農地의 利用增進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第21條(農地의 보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農地의 보전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하다.
 -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施 行함에 있어서 農業生産基盤이 整備되어 있거나 集團化되어 있는 優良農地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3節 農業生産構造의 高度化

第22條(農業生産基盤의 整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속적이고 안 정적인 農業生産力이 확보될 수 있도록 農業生産基盤의 整備를 위

- 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第23條(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産의 流動化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生産性을 향상시키고 農業人의 所得이 安定될 수 있도록 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産의流動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第24條(農業機械化 등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營農費用을 절감하고 農業의 生産性을 높일 수 있도록 農業機械・農業資材・農業施設의 研究・開發・普及과 그 活用을 위한 教育訓練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第25條(農業科學技術의 振興)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先進 化・尖端化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尖端農業科學技術 및 實用農業 技術의 研究・開發・普及 등 農業科學技術振興을 위한 綜合的인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6條(벤처農業 등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分野의 尖端科學技術 및 營農・經營技法의 開發을 獎勵하고 이를 普及하며 農業과 農業關聯産業의 有機的인 連繫를 통하여 農業의 附加價值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農業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 第27條(知的財産權 등의 보호) ①政府는 農業遺傳資源, 營農技術, 商標 등 有・無形의 農業關聯分野의 知的 權利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②政府는 地域特化産業의 육성과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地域의 固有한 특성을 가진 農産物 및 그 加工品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第28條(農業 및 農村地域의 情報化)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 및 農村地域에 대한 情報化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 ·施行하여야 한다.

-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 및 農村地域 關聯情報를 제공하는 者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第29條(農業技術開發事業의 추진) ①政府는 實用農業技術, 農業關聯 生産技術 등을 신속하게 開發·普及하기 위하여 農業關聯 研究機 關 또는 團體 등으로 하여금 農業技術開發研究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開發硏究課題를 수행하는 農業關聯 硏究機關 또는 團體 등에게 이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第4章 農産物의 需給安定 및 流通改善

- 第30條(農産物의 需給 및 價格의 안정) ①政府는 農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價格의 안정을 위하여 農業觀測, 生産調整, 收買備蓄 및 生産者團體의 自助金造成 등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産者團體 또는 農産物流通業을 영위하는 者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第31條(農産物의 流通改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生産 地와 消費地에 都賣市場, 共販場, 物流센터 등 다양한 流通施設을 확충하고 그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包裝·規格化 등 物流의 標準 化를 촉진하고 다양한 流通情報의 蒐集·제공 및 流通教育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第32條(農産物의 品質管理 등) ①政府는 農産物의 商品性提高와 消費 者保護를 위하여 原産地表示 및 品質管理 등을 위한 施策을 수립 ·施行하여야 한다.

- ②政府는 國民의 건강과 農業環境의 보호를 위하여 輸出入 農産物과 動植物에 대한 檢疫 및 衛生檢查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第33條(農産物加工産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과 食品 産業의 調和로운 발전과 農産物의 附加價值를 높이기 위하여 農産 物加工食品 및 傳統食品의 研究開發, 加工施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5章 農産物의 交易 및 國際協力

- 第34條(對外通商 및 國際協力) ①政府는 우리나라의 權利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綜合的인 農業通商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農業分野의 國際協力增進을 위하여 農業政策에 관한 情報 및 農業人力·技術의 交流, 農業關聯 國際機構活動에의 참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政府는 海外依存度가 높은 農産物의 안정적 供給을 위하여 農業 投資環境調查 등 海外農業開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第35條(農産物의 輸出振興)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輸出振興과 우리 食文化의 傳播 등을 위하여 海外市場開拓, 貿易情報의 蒐集・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産者團體 및 農産物을 輸出하는 者 등에게 國際規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第36條(農産物의 輸入管理) 政府는 農産物의 輸入增加로 인하여 國內의 農業發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際規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措置를 강구할 수 있다.

第6章 農村地域開發 및 所得支援

- 第37條(農村地域開發施策의 수립)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 民의 삶의 질 향상과 國土의 균형있는 開發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 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農村地域開發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 다.
 -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施策을 수립하는 때에는 環境保全을 고려하여 開發과 보전이 調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第38條(農村地域産業의 振興 및 開發)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民의 所得增大와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위하여 産業團地造成, 地域特産品生産團地의 육성, 農産物加工業을 비롯한 農業關聯産業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都市民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都·農間의 交流擴大 및 農村住民의 所得增大를 위하여 地域의 特色을 살린 綠色觀光 및 休養資源의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地域 文化施設 등의 設置・운영과 地域의 文化行事開催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第39條(農業人에 대한 所得支援) 政府는 農業人의 所得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지원을 한다.
 - 1. 零細農 등을 위한 지원
 - 2. 土壤 등 環境의 보전을 위한 지원
 - 3. 農業災害에 대한 지원
 - 4. 農業經營의 規模化 등 構造調整을 위한 지원
 - 5. 기타 生産과 직접 連繫되지 아니하는 所得補助

- 第40條(農業災害에 대한 施策) 政府는 自然災害로부터 안정적인 農業 經營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農産物生産을 위하여 旱害・水害・風害・冷害 등 農業災害에 대한 豫防・應急對策・復舊와 農業災害保險, 共濟制度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第41條(農地轉用負擔金) ①農林部長官은 農村 등의 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投資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地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造成費를 納入하여야 하는 者에 대하여 轉用負擔金을 賦課・徵收하여야 한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의 금액은 地價公示및土地등의 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賦課基準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의 수준, 轉用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 등을 참작하여 差等賦課할 수 있다.
 -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을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내에 이를 納入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農地轉用의 許可·協議·同意 또는 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農地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變更承認을 얻어야 하는 者중 轉用負擔金의 賦課가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轉用負擔金이 減免되지 아니하거나 減免比率이 보다 낮은 다른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轉用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轉用負擔金중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제외한 금액은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에 納入하여야 한다.
 - ⑥農林部長官은 農地法 第53條 또는 農漁村振興公社 具農地管理基

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을 받은 者에게 轉用負擔金의 賦課·徵收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지급할 수 있다.

- ⑦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의 賦課·徵收 및 過 誤納金의 返還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⑧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用負擔金을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내에 納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 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7章 農業・農村發展計劃의 推進

- 第42條(農業・農村發展計劃) ①農林部長官은 農業의 발전과 農村地域의 균형있는 開發을 위하여 農業・農村發展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과 그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廣域市・道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道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③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計劃과 그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市·郡·區 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郡·區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發展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43條(農政審議會) ①農業・農村의 發展에 관한 基本計劃, 市・道計劃 및 市・郡・區計劃 기타 農業・農村의 發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에 中央農政審議會를, 市・道에 市・道農政審議會를, 市・郡・自治區에 市・郡・區農政

審議會를 각각 둔다.

- ②각 農政審議會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44條(農業・農村發展計劃의 효율적 추진) ①農林部長官은 基本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豫算編成時 基本計劃에 포함된 事業費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農林部長官은 각 地方自治團體의 農業·農村發展計劃에 대하여 基本計劃과의 連繫性,推進實積 및 成果 등을 評價하여 그 결과에 따라 豫算을 차등지원할 수 있다.
- 第45條(農政에 관한 年次報告書) ①政府는 매년 農業·農村動向과 農政施策 등에 관한 報告書를 작성하여 中央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市・道知事 및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은 매년 당해 地域의 農業・農村動向과 農政施策 등에 관한 報告書를 작성하여 각각해당 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해당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에는 각종 農業施策 등에 대한 評價가 포함되어야 한다.

第8章 補 則

- 第46條(準農村地域에 대한 지원)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村외의 地域으로서 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과 都市計劃法에 의한 開 發制限區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農村 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第47條(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租稅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 第48條(權限의 위임 등) ①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

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漁村振興公社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管理基金의 運用・관 리업무를 委託받은 者로 하여금 第43條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의 徵收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 1 農業基本法
- 2. 農産物價格維持法
- 3. 農水産物輸出振興法
- 第3條(農業人後繼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중전의 農漁村 發展特別措置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人後繼者 또는 林業人 後繼者로 선정된 者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後繼農業人으로 선 정된 것으로 본다.
- 第4條(專業農業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된 者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 第5條(營農組合法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 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은 第 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으로 본다.
- 第6條(農業會社法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 發展特別措置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은 第 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으로 본다.
- 第7條(農地轉用負擔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

村發展特別措置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 하여야 하는 農地轉用負擔金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 거나 賦課하여야 하는 農地轉用負擔金으로 본다.

- 第8條(종전의 法律에 의한 告示·처분·命令·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農業基本法,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처분·命令·지정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 第9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종전의 農水産物輸出振興法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農水産物輸出振興法의 規定에 의한다.
-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3第1項 表의 農林地域欄의 第1號 및 自然環境保全地域欄의 第5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0條"를 각각 "農地法 第30條"로 한다.

第13條의3第4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0條"로 한다.

- ②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16條第2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0條" 로 하고, "同法 第44條"를 "同法 第34條"로 한다.
- ③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4條第1項第1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을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으로 한다.
- ④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및 第3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農業人 등"이라 함은 農業·林業 또는 漁業을 경영하거나 이 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3. "專業漁業人"이라 함은 漁業의 경영규모와 技術水準, 投入勞動 時間 등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漁業 人을 말한다.

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條(專業漁業人의 육성) 海洋水産部長官은 漁業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經營合理化를 도모함으로써 生産性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漁業에 관한 經營能力과 意慾이 있는 漁業人을 海洋水産部 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業漁業人으로 육성한다.

第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條(漁業人後繼者의 육성)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漁村에 定着하여 漁業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靑少年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漁業人後繼者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4條의2를 削除한다.

第5條第2項第3號중"第6條"를"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로 하고, 同項第4號중"第7條"를"農業・農村基本法 第16條"로 한다.

第5條의2, 第6條, 第7條, 第10條, 第10條의2 및 第19條를 각각 削除 한다.

第21條第1項중"第48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發展基本方針"을"農業·農村基本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農村發展基本計劃"으로 한다.

第34條第1項중"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号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農政審議會"로 한다.

第36條第1項 で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 号 "農業・農村基本法 第

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農政審議會"로 한다.

第38條 및 第45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第7章(第48條 내지 第52條)을 削除한다.

⑤農漁村整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2項 3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 農漁村發展審議會" 3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 農政審議會" 로 한다.

第79條第2項중"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道農漁村發展審議會"를"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市・道 農政審議會"로 한다.

第103條 3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定住生活圈開發委員會"를"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農政審議會"로 한다.

⑥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中央農政審議會"로 한다.

第5條第2項 で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 農漁村發展審議會" 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 農政審議會" 로 한다.

①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 로 한다.

⑧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다음 各目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을 "農業·農村基本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다음 各目의 요

건에 모두 적합한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 社法人"으로 한다.

- 第13條第1項 6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 農漁村發展審議會" 6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 農政審議會" 로 한다.
- 第32條第1項 3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道 農漁村發展審議會" 3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道 農政審議會" 로 한다.
- ⑨農村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第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農業・農村基本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技術의 開發
- ⑩ 地対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 ⑪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4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農業·農村基本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36條第5項중"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後繼者 및 漁業人後繼者(이하"農・漁業人後繼者"라 한다)"를 "農業・農村基本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後繼農業人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人後繼者(이하"後繼農・漁業人"이라 한다)"로 한다.

第38條 本文 "農・漁業人後繼者를" "後繼農・漁業人을" 로 하고, 同條第4號 で "農・漁業人後繼者" 를 "後繼農・漁業人" 으로 한다

第40條 本文 3 "農・漁業人後繼者" 3 "後繼農・漁業人" 으로 한다 ①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 3 다음과 같이 改正

한다.

第49條第1項 。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을 "農業・農村基本法" 으로 한다.

- - 1.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 ⑭植物防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農・林業人 및 農・林産物의 生産者團體"를 "農業・農村基本法 第3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經營體 및 生産者團體" 로 한다.

- ⑤外國人投資促進法 示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2項 需要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5條2" 要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 로 한다.
- ① 適用道開發特別法 で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의2 で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 "農業・農村基本法" 으로 한다.
- ⑩中小企業創業支援法令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4項令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 ⑩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8條第3項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 "農業・農村基本法" 으로 한다.

第267條第4項 3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 組合法人과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 9 "農業・農村 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11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基本法, 農産物價格維持法 및 農水産物輸出振興法의 規定을 인 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圆圈

공청회 토론 내용

间睡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 내용

<서울지역 공청회>

진행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시현)

지금부터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청회에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상우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좌 장 : 박상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농업과 농촌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많은 분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해서 국내 외적으로 큰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WTO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면서 국내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곡물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각 나라별로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생각도 친환경적 농업,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농업,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업으로 시각이 바뀌고 있

습니다. 지방화 시대 그리고 통일의 시대에 대비한 농정의 필요성도 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농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재 농림부가 제정하려는 「농업·농촌기본법」(안)에 대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을 경쟁력있고 환경과 조화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하고, 농업인은 기업가 정신과 전문성을 갖춘 경제주체로 바로 서게하고, 농촌을 산업과 자연이 조화된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 발전시키기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그 법적 기초를 위하여 기존의 농업기본법과 농어촌특별조치법을 여건에 맞도록 정비·보완하여 새로운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법안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인이나 소비자, 농민 단체, 그리고 학계, 언론계, 공무원 이런 분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 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뒤에 농림 부 농업정책국장께서 주제발표를 통해 법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이지만, 경청해 주셨다가 좋은 충고와 고언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활발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 이어 이번 주 수요일 대전에서 역시 농업관련단체와 학계, 공무원 등 여러분을 모시고 두 번째 공청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쪼록 이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탄없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모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자로, 방청 객으로 저희 연구원에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 다.

오늘 공청회의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 30분 동안 주제

발표를 듣고 그 후에 여덟 분의 지정토론자를 중심으로 한시간 반정도 토론이 있겠습니다. 지정토론이 끝나면 청중석의 토론 및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자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시간에서 3시간 반정도 소유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청회 들어가기에 앞서 발표자와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실 농림부 김정호 농정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동희 전 단국대 교수, 김완배 서울대 교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사무총장, 한국개발연구원 설광언 박사, 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조성우상임부의장, 농협조사부 이종수부장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박사이십니다.

지정토론자께서는 십분 정도 토론내용을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중석의 토론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재오신 기자분들을 위해서 기사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제 발표를 하는 동안에 토론해 주실 내용을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청중석에서 토론을 하실 분들은 성함, 소속, 직책, 토론주제를 간단히 메모를 하셔서 진행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먼저 김정호 농정국장의 주제발표가 있은 후 지정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10분 정도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의견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명하실 필요 없이 의견이 같다고만 말씀해주시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한정해주시고 상황설명이라든지 오늘 주제와 동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농업인·학계·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연구소·언론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우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임부의장 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전국농민회총연맹 상임부의장)

우선 기본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6개가 나오는데, 이전 문민정부에 비해서 농민 지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최우선 과제로 나와 있고 과거에 경쟁력강화라는 측면의 일방적 강조에서 벗어나 농가 경영안정과 소득지원 등으로 분명히 못박아져 있는 점과 소비자 지향적인 농정이나 환경보전, 특히 농촌지역사회 유지 발전에 있어서도 과거 농정과는 달리 고유 농촌의 특성을 살린 발전 등의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제정 취지에 있어서 지금쯤이면 상당히 난립하고 있는 농업관련 법을 정비를 통해 하나의 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문화된 법들이 많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원고에 쟁점사안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선 쟁점 1에서 기본 원칙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이 서 있어야 그 다음 시책의 기본 방향 및 단위별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원칙 조항에 시장경제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질서는 당연한 것이므로 굳이 천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정책의경우는 시장실패를 방지·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이 조항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식량의 범위를 식품 또는 영양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

각합니다.

쟁점 3에서 농업회의소와 농림수산정보센터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우선 농림수산정보센터라는 특별한 기관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업무가 농림수산정보센터만의 고유업무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상태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굳이 농림수산정보센터라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정보 지원업무는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는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농 업인과 협동조합, 농업관련산업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법안에 관련 규정을 넣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조항을 넣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9월 15일 법제정 이전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기로 방침 읔 정했습니다. 또한 각 기관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새로운 기 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구조조정이란 기관을 폐지하는 것만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난 립해 있는 농림관련 단체의 정리하므로써 개별 역할도 훨씬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정부재정에 무조건적으로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인 재정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정부가 위탁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재정 지원을 받고 투명하게 사업을 한다 면 이런 문제들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쟁점 4에 있어서 농 업인의 책무조항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이제 는 정부로부터의 시혜 내지는 구호적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전문적 인 경영인으로서 설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의 역할과 규 정을 넣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쟁점 5의 농업·농촌발전계획 조항의 삭제 문제인데 이것은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커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좁은 국토환 경 속에서 농업의 특성상 기본적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나 일치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따라서 농업분야별로 비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발전계획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생각해봐야 할부분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농업의 발전을 얼마나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 중앙정부 정책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 가능성 문제, 중앙정부의 정책내용이 잘못될 때 지방정부의 어떤 노력도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에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쟁점 6에서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문제는 농민입장에서는 수치가 명시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법상식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쟁점 7에서 총칙 수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영양과 건강 증진이란 내용을 새롭게 제시하고, 특히 기본이념에서 타산업 종사자 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한다는 조항 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5개의 기본시책방향에는 농업소득이란 내용이 나오는데 시책 방향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책의 큰 방향에 반드시농업인의 농업소득안정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법안을 살펴보면 13, 14조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본법에서는 간략하게 규정하고 하위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조의 귀농과 교육훈련지원 조항에서 전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농림부 업무인지노동부 업무인지 저로서는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귀농인력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규모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기본법에 귀농과 전업하는 농가에 교육지원 훈련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해볼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절에 농지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농지

전용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23조에서 생산기반정비에서 농업경영규모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조항에 보면 적정한 영농규모를 확보한다고 돼있습니다. 확대는 표현보다는 영농규모의 안정화 혹은 확충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6조의 벤처농업의 육성 조항은 구체적인 검토 없이 지나치게 시의성만을 고려한 것 아닌가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제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2조의 자조금조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재정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산단체의 경우 축산진흥을 위한 자조금제도에 대한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자조금의 활용・운영 등에 생산자단체의 자율성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1조 농촌여성의 지위와 복지향상 조항에서 농촌여성이라 하면 농촌에 사는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여성농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2조 6항에서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생산중립적인 보조가 들어간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3조 재해관련 조항에 한해·수해·풍해·냉해만재해로 규정되어 있고 병충해는 재해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올해의경우 발생한 병충해는 재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지할 수 없는병충해가 있거든요. 따라서 병충해도 재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대단히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토론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희(전 단국대 교수)

저는 4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13 조에 나와 있는 현재의 영농조합법인은 생산·가공·유통을 다하도 록 되어 있어서 협동조합하고는 완전히 이원화된다는 의미를 갖는 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협동조합-농협·축협-이란 조직은 직접 생산·경영은 못하도록 되어있는 대신 다른 신용·유통·가공·공제 등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유통분야가 협동조합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이분화가 되어서는 협동조합조직에 혼선이 올 것으로 생각되므로 내 생각으로는 영농조합을 생산조합, 농업경영조합법인으로만 한정하여 협동조합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농사조합법인이 협동조합법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분화 되어 있어서 협동조합조직에 대혼선을 초래하게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구조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에 보면 후계자육성,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업·귀농, 지원의 효율화, 농업회의소 등으로 정리되어 그 내용을 보면 농업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소득안정을 위한 규모화·전문화·협동화 촉진과교육훈련과 대형상담자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WTO체제하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시장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영농을 해 나가야 하므로 생산주체로서 농민의 책임이 대단히 무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농업인의 책무를 별도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찬성입니다.

농민이 경제주체로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혁신을 책무로써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요소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조개선 수행에 있어서 그 주체가 정부가 아니냐하는 의혹을 살만큼 정부가 크게 개입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체는 농업인·농민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동조합조직 및 생산자조직이 앞으로 더욱 효율화되고 강화되므로써 농업경영·농가의 구조가안정될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 분야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집중투자를 통해서 농업경영체가 모처럼 농지도 집단

화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했다 하더라도 경영주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에 의한 분할상속제로 인해 농장자체를 세분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를 막기 위해 유럽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일자상속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입법적 제도가 되어 있고, 대만만 보더라도 70년대부터 가령 아들이 다섯이 있을 경우 한 아들에게 농장을 넘겨주면 정부에서 다른 아들에 대한 지분을 전부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5년동안 농지세 등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착실하게 짓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재산 등 기본적 조건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생을 걸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농업구조개선에는 수십조원를 투자하면서 상속제도 하나만 바꾸면 가능한 데 이 부분에 대한 농업경영주체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상속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자를 여러 가지 불확실성·불안요인에서 좀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해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정부에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모두 보상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공제보험에 대한 제도화를 이번에 촉진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농업재해보호대책이라든지 일반재해대책법만 가지고서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조그마한 영농재해는 농업인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가지고 그것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가능하다는 것은 WTO체제하에서도 허용되어있는 보류사업으로서 시행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시설원예 등 수만핵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재해에 대한 마땅한 손해보험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태백시의 어떤 농민이 50억

원을 투자해서 아홉사람이 비닐하우스를 크게 했는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유리가 1/3이 깨지는 등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손해보험에 들려 했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로와서 보험가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설원예의 확충 등 농사에도 점점 자본투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므로 재해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해소 방안도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이러한 인식 하에서 농업수입에 대한 보험 및 여러 가지 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벼농사에 대해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UR 협정과 관련한 법까지 통과시켜 놓고도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래서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 등과 같은 수입보험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측면에서 경영안정장치-인적 지속성-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지속성을 보장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후계자 육성과 상속제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Farm of son farm(부자 농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늙어지면 아들에게 근저당을 통한 판매 방법으로 농장을 후계상속 시킵니다. 일본은이런 제도는 없지만 최근에 가족경영협정화를 통해서 시아버지, 아들, 며느리가 전부 협정을 해서 농사를 모든 가족이 짓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우리는 협정이 없이 시아버지 얼굴만 보고 그냥 농사를 짓는 반면, 일본은 예를 들면 며느리가 내가 이만큼 공을 했으면 가을에 가서 내 지분 배당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서 일을 한다는점입니다. 즉 상속제도 혹은 경영체 운영을 점진적으로 소위 민주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식량안보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제 10조를 보면 정부는 양곡을 비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하나 변변히 마련하지 못한 채 수십년을 내려 왔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비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신뢰성을 갖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도 최소한의 양곡비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최소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통일 농업을한다고 크게 내세웠는데 북한에 당장 필요한 것이 식량 아닙니까? 따라서 통일 농업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조사·연구 등 사전 준비 외에도 필요한 식량확보를 위해 힘을 길러 식량공급력을 확대한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통일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위한 수량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제시할 수 없지만은 식량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식량자급률을 유지에 대한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자급률 제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생산자원은 농지입니다. 최근의 농지와 관련한 통계를 보면 1년에 3.5만ha에서 4만ha까지 농지가줄어드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21세기에는 얼마가지 않아서 농지가모두 없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도고층아파트에 모두 둘러싸여 농지는 지목상 있을 뿐 쓸 수 없는 농지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에 따른 농지의 황폐화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식량안보의 기초로서 농지자원과 수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농업회의소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제5 공화국 때부터 주장해서 민한당에 의해 설립하려다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국제화·시장개방화 시대을 맞이하여 농업인이 짊어질 책임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도 이제 독창

적,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경영혁신을 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인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할 일에 대하여 건의도 하고, 농민 스스로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서로 토론을 통해 행동지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조직이 농업인에게도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도 수십개의 농민 단체가 있지만 전부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농정 참여 비중이 높아 갈텐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용하기 위해서도 농민 조직이 농정전반에 대해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회의소와 관련된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량의 개념을 식품 등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완배 교수님 부탁합니다.

김완배(서울대 교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체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안)은 농발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하고 게다가 농업관련 법률의 헌법과 같은 성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안의 성격이 기본법도 아니고 농발법도 아닌 애매모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기본법 성격도 퇴색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법안을 제안한 농림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기본법 본래의 성격과 의미를 그대로살려나가는 기본법을 만들고, 농발법은 구조개선법 등으로 명칭을 바꿔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제안된 법안은 기존의 기본법 내용은 방향만 제시되어 있는

데 다른 농업관련 법률에서 흡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법체계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영농조합법과 관련된 내용은 너무 세세하게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기본법이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 제정 목적, 이념 또는 정의 등에 나와 있는 개념을 보면 농업을 기존의 농업생산분 야로만 한정해 보는데 머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5년만 지나도 우리 나라 농업생산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2~3%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라이제는 농업의 개념을 농업관련산업까지 확대해서 전체를 같이 볼수 있게 되어야만 미래 지향적 성격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명자료를 보니 농업관련 산업, 예를 들어서 생산자재나 유통가공산업, 농업관련 서비스산업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면 타부처에서 문제삼지 않겠는가 우려하는데 타부처의 업무까지 모두 관장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농업을 농업관련산업까지 포함하여 농업정책을시행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농업의 개념을 확대하여 명확히 밝혀두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의 개념이 풍요로운 산업생활, 환경공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보존에 기여 등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은 매우 수동적이고 희생적인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촌의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하여 도시민들이 와서 살기를 원하는 공간으로까지 기본법에다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의 개념도 기존의 Raw Product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식품개념 및 가공식품까지 포함한 식품경영으로 정의해 두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의 개념을 Raw Product만 한정하고 뒷부분에 서는 식품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도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업·농촌·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1조 목적과 관련하여 수정한 쟁점 7항을 수정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수정안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농업·농촌문제라고 하는 게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시장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 또는 지원 등을 법의 목적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정안을 좀 더 강력한 표현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쟁점 3과 관련하여 농업회의소와 농림정보수산센터 등특정기관 및 조직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관련 기관 및 생산자 조직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생산자 조직육성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협동조합법,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항들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권 조직뿐만 아니라 비제도권 농민 조직, 자생조직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생산자 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기본법에 농민의 생산자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한다는 기본방향을 밝히고 그것에 따라서 농업회의소 등과 같은 조직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생산자 조직육성 조항 신설과 함께 농업관련 기관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조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쟁점 4의 농업인의 책무조항 신설은 찬성입니다. 쟁점 5의 농업· 농촌발전계획 부분도 역시 저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가이드 라인 을 제시해서 농정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점 6의 식량 자급률 목표 제시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다만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충분다하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2장 농업·농촌기본시책이 5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된 기본시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6조의 내용 중에서 경영규모 확대라는 표현을 효율적 경영형태확산 및 적정규모화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3조 농업경영규모의 확대도 다른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4장의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내용의 기본방향에 유통정보, 유통교육,유통금융·수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농업관련 산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법 내용을 보면 유통이나 가공사업분야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농업생산 자재산업이나 농업관련 서비스산업에 관한 것은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입장을 담을 수 있는 별도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계에 계신 두 교수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단체를 대표해서 김재옥 총장님 말씀부탁드립니다.

김재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우선 저는 이 농업·농촌기본법이라는 이 법이 굉장히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농업·농촌기본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명칭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체적인 법안을 보면 일부는 시책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선언적이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관된 통일성 을 갖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법안을 한 법에 모두 포함시키려다 보니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농업·농촌법은 농민·농촌에만 초점을 두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21세기를 지향하는 법이라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관여가 되는 법, 따라서 농민과 소비자, 농촌과 도시를 가르는 법이 아니라 다함께 조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산성 향상도중요하지만 안전한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하느냐 하는 쪽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쟁점 1에서 기본원칙을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식량의 범위를 식품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의 농업이 원료 농산물 생산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가공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으로의 확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식량의 범위를 조금 넓혀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쟁점 3의 농민회의소 및 농림수산정보센터 이런 관련 법 조문이 들어있는 것은 아주 이상합니다. 이런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므로 인해 법체계가 전체적으로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도의 법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책무조항은 생산자라는 입장에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책무 조항은 소비자는 농산물 구입 이 외에 무슨 책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용어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쟁점 5의 전체적인 농업·농촌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으로 볼 때 서로 협력관계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므로써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방의 시책하고 같이 가는 계획을 세운다면 중 앙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자급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법이 2000년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률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법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30%를 유지하겠다는 계획 하에 법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자급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런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적어도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고 농촌 및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2000, 2010, 2020년대의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농지 중에서 어느 정도를계속 보존할 계획인지 등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의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명확히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쟁점 7의 목적 부분은 김완배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안보다는 뭔가 좀더 확실한 목적 및 기본이념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개별적 내용에서 벤처농업의 육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벤처농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벤처농업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개념을 제시한 후 법안에 포함시키거나 그렇지 않다면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2조의 2항에 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유통업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소비자단체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34조에 농산물품질관리하고 관련해서 이제는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 생산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산물에 대한 농약자율검사, 원산지표시, 품질관리 등 필요한 시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조 및 제36조의 3항에도 관계가 되는데 정부는 식량 특히 수입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해외농업투자에 관한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안정성에 대한 것 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외농업투자에서 실패 한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패하는 농업투자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합니다. 해외농업 투자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선행되어 실패하는 농업투자는 하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40조의 관광자원·휴양자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녹색관광이라하는 것이 아마 Eco Tourism·Green Tourism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칠레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농민·어민과 관련한 글을 쓴 파블로라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관광자원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녹색관광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41조 농촌여성의 참여확대는 중요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농촌여성과 같이 Workshop을 해본 적이 있는데 농촌여성들의 말씀이 농업생산에 직접 참여하는데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받거나 농약의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조문에 선언적인 농촌여성의 참여확대 뿐만아니라 참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제1조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량 공급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량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이 법 의 목적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5조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므로써 단순히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량을 제공한다는 목적이 확실하게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단체대표 이종수 부장님 부탁합니다.

이종수(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부장)

저는 먼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선언하는 조항을 총칙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식량안보는 물론 환경보존, 지역사회 고용안전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공익적 가치가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에 각종 지원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이 법의 기본목표이면서 농정의 기본목표인 식량안보와 도농간 소 득균형에 대한 내용을 기본법의 목표 혹은 별도의 농정의 기본목표 조항을 설정해서라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자 급률의 목표와 관련하여 제5조의 적정한 식량 수준의 유지를 위한 농 지 보존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매우 애매합니다.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 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식량자급률 목표와 품목별 생산 목표를 설정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시행령에서라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균형과 관련된 내용을 제42조와 제43조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별도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장을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나의 조항에는 농산물 가격지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서 도시와 농촌 소득균형을 위해서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허용범위 내에 가격지지를 지지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다른 조항에는 쌀 농가의 소득손실보상을 위해 쌀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환경농업에 관한 조항, 지역

간 소득 격차에 따른 조건불리 지역에 대한 조항, 영세농, 고령농, 농업체의 대책, 경영규모화, 농업재해 시책 등의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농지의 보전과 자산가치 유지와 관련하여 농업진홍지역의 보전에 따른 농업진홍지역의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직불제를 통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직거래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의 변동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통협약 및자조금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보다는 좀 더 강력한 농산물의 품목별가격안정기금을 도입해서 생산조정을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32조 3항을 가격안정기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정보의 수집·분산과 관련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도매시장 이후 단계에 소비자 유통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도매시장 이후 단계에 농산물 유통 정보수집 및 분산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지방의 농촌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농업통계도 그렇습니다만 지역 농업 통계에 관한 것이 전혀 없어서 거의 지역농업을 설계할 만한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농업통계의 수집·분산에 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등과 관련한 문제는 김동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안의 모든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을 통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이 법안대로 실현 될 수 있 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좌 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지정토론자가 세분 계시는데 이 분들이 토론을 마치면 발표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 혹은 부연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청석에서 토론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정토론자들께서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계시면 다시 토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합니 다. 그러면 이제 연구원를 대표해서 KDI의 설광언 박사님 부탁합니 다.

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법적 및 구성 측면에서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9월 정기국회에이 법안을 상정하려다 보니 일본과 같은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조문을 만들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농업기본법이라는 이름 하에 기존의 법에서 없어지는 내용은 모두 여기에 담다보니 반은 기본법이고 반은 일반 개별법이나 시행령 비슷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꼭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도 그저 형식에 그치는 공청회보다는 전문집단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최소한 5년 이상의 수명은 유지될 수 있는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기본법은 미국의 Farm Bill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같은 기본법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안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내용이 되어야지 너무 세세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기본법 자체가 이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 만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부처의 이익이 되는 부분은 존치한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이익이 있다고 기본법에 자꾸만 남겨 놓겠다는 생각은 기본법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희생할 줄 아는 정신으로 기본 법을 만들고 꼭 필요하다면 따로 하위법을 만드는 것이 옳은 접근 방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법안에 목적 다음에 원칙이라는 조항을 넣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앞서 김완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정의 목적에 농어민의 소득을 도·농간의 균형 유지라는 내용이 포함되고이를 위해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농간 균형소득은 추구를 하되 그 방법은 농민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지원하는 것은 중점을 두고 다만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면 생산중립적인 지원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몇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원칙에 쭉 나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도 조금 부족하다 는 생각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안보 문제에 있어서 수치를 법안에 넣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법에 우리가 의지를 넣는다는 건 좋지만 현재 식량안보의 개념을 어디까지 둘것이나 여기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식량안보를 위해서 논 면적의수치를 넣는다든지 혹은 식량자급률을 90%라고 할 때 그 90%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리도 없이 수치가 들어간다는 것은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수치가 기본법에 포함된다면 상당히 위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을 또 바뀌어야 할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안 제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념과 관련하여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김완배교수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총칙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법에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배경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기본법 자체를 이

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본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농민단체에서는 농수산정보센터는 안되지만 농업회의소는 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농업회의소는 특정집단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논점에서 본다면 농경연 등과 같은 조직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포괄적 조항이 기본법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회의소가 기본법에 근거를 두어야만 위상이 높아진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특정집단이 기본법에 근거를 둔 이런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경연의 이정환 박사님 부탁합니다.

이정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우선 구체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에 보면 제11조의 후계자 지원, 제12조의 전업농 지원, 제15조의 귀농자 지원과 같은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6조에는 종합금융제를 제시하고 있어서 상호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금융제란 사업별로 나눠서 지원하지 않고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전업농·후계자사업, 귀농자사업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면 규정사항이 서로 마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전업농후계자, 귀농자지원 등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여러 조문들이 앞서 조성우 부회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관심사항들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안 장기적인

시점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벤처농업육성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자체도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지만 매우 복잡한 사항인데 이 법 조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녹색관광이라는 용어도 아직 학문적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법률용어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음에 농업회의소라든지 정보센터지원 등은 지금 이 법에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현재 거론되는 여러 가지 관심사항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이 법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현재의 관심사항들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냉철한 눈으로 법안 제정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기 쟁점에서도 나와 있지만 중앙계획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 중앙계획이란 것에 무엇들 담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중앙계획은 수량적인 목표들을 상당부분 포함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중앙정부의 농정이 수량목표를 제시하는 농정계획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농정은 제도와 법률을 제정하고 시장과 각 개인의 역할이 충분하게 신장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기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일은 많고 실용성은 없는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공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공산업 및 비료산업이 농업에 포함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농정문제 혹은 농업에 영향을 주는 여러 factor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는 생각하지만 농업기본법에서는 농업은 농업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가들의 농산물 가공활동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보장한다는 정도

의 이야기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량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안에는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한 조항에서만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저는 식량문제에 관해 좀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식량자급률이라든지 농지보존목표를 수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앞서 설광언박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국내생산 쪽만 강조되어 있는데 아까 김동희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축문제라든지, 우리의 국토자원조건으로 다수의 식량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가 냉철하게 인정한다면 식량안보라는 것은 수입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정부의 대단히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식량안보는 국내 생산유지,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비축문제 그리고 비상시의 적절한 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난 기본적인 원인은 앞서 김완배 교수와 설광언 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법이지금 농업기본법, 농발법 및 현안 관심사항이 모두 합쳐서 나온 혼혈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내용이나 성격이 상당히 불분명하기때문에 조문간의 균형이 안 맞고 어떤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조의 농지전용부담금에서 보면 무려 6항에 걸쳐서 회계 관련 사항, 부과금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이되어 있고, 어느 조문은 원칙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광언 박사나 김완배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충실하게 만들고, 농발법개정안은 농발법개정안 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법률화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 있다면 농발법개정법에 포함을 시키는 식으로 정돈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농발법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농발

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기본법은 우선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나라 농업이 우리경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환경적 측면, 문화적인 측면, 식품의 공급 측면, 국토관리 측면에서 내외 천명하는 것이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우리 나라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량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농업과 농촌을 지배하는 질서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또한 정부, 지방정부, 시장 그리고 농업인이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인가 등을 분명히천명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천명을 하고 나서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에서 특히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과 같은 SOC와 관련된 공공투자, 시장기반 조성을 통해서 경쟁력 기반을 만드는 것, 자원관리 기능 등 중요한 기능들을 나누어서 각각 한 장씩 정리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부 의 기능 중 첫 번째는 직접지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적 절한 부담금을 부과를 통해 농업생산이 사회적인 최적수준에 이르게 하고 적정한 농법을 통해 농업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 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보상을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한편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는 어떤 농 업생산활동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부담금을 매겨서 억제한다는 정신 들이 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 제42조에 직불제도와 관련 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가의 소득보전 적인 것을 규정하는 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직불제도는 소득보전적인 기능과 외부경제 효과에 대한 보상적인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 므로 이를 통해서 사회적, 지역적으로 최적수준으로 가져가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접지불에 대한 정부의 책무, 환경부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치, 부담금 제도 등이 이제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본법이 사문화 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 모든 시책의 기본법의 정신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앞에 이 기본법을 만드는 제안서에서도 농업부분에서의 헌법적인 성격의 법을 만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서 현실적 실천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농업에 관련된 모든 법률, 모든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이 기본법과관련을 갖고, 일치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법률안이나 시책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시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가지고 심도 있는 전문가 토론과 학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고맙습니다. 황민영 사장님 부탁합니다.

황민영(농어민신문사 사장)

농업기본법이 꼭 필요한 것인지 먼저 자문해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은 시대를 초월해서기본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정안보다는 목적과기본이념이 잘된 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기본법이면 충분하지 농촌기본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라는 공간은 농업이 올바로 발전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농민이 여유롭게 가꾸어 놓으면 다른 국민들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는 것이므로 농업·농촌기본법이라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입니다. 농지보존은 곧

식량자급을 의미합니다. 자급률이 50%냐, 30%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토자원인 농지보전이 식량생산에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농지는 앞서 김동희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보유형태라든지, 상속제도 또는 전용부담금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농민들이 생산분야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재해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히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농업구조 문제에서 농어민후계자 관련 내용은 한 조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족농, 경영안정혁신, 전업농업인 선정지원, 영농조합법의 설립지원 등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법조문에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본법에서 얼마만큼 농촌에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 농업기본법에 빠져 있습니다. 농업생산조직인 협동조합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농업의 기본법 정신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라도 확실히 담아놓는 것이 시대적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한 개념정의가 되지 않은 벤처농업 관련 내용은 제외시켰으면 합니다.

농업기본법은 농민이 농업을 영유하는데 기본적으로 편리가 보장되고 농업을 함으로써 타산업종사자와 균형성이 깨지지 않는 형평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영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본법의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다른 법이 규제되고 농업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얘기하듯이 농업기본법에 확실히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항상 그것에 기준해서 다른 여타 농업시책이나 과제 및 기준을 얘기할 수 있는 방향 제시라는 측면에서 이번 농업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덟분의 지정토론자께서 지금 정부가 제정하려고 하는 농업·농촌기본법의 성격, 내용, 쟁점 에 대해서 진지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제 방청석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에 부탁말씀 올린 대로 성함, 소속, 직위를 말씀 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청석 1(양 은, 농어촌진흥공사 기획조정실)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시행되면 농발법에 담겨있는 정규생활법 제반 사정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연합기본법이라는 성격하고, 법의 목적에 보면 농촌이 삶의 공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의미로서 농촌 공간을 생각한다면 정규생활법원칙에 관한 선언적 의미는 기본법에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9조의 통일대비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의 농업생산체제, 농지·시장 및 유통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시책을 수 립하도록 되어있는데 통일 후에 북한의 식량부족사태나 또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생산 기반입니다. 조사 연구범위에 농업생산기반정비를 포함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제36조의 해외농업투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해외농업투자를 한다는 것은 국내에 생산되는 식량으로 식량자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의 농업투자를 하는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사항은 앞에 통일대비 농 업구조에 기본적으로 기본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16조의 자금의 효율적 지원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 관은 자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진단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현행농업분야의 자금지원기관은 농림부산하 단체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고, 자금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규모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미리 정해지고 금융기관에서 담당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자금의 대출과 회수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경영진단이나 상담을 꼭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고맙습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방청석 2(윤상익, 여주양돈협회지부장)

이 자리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인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주시길 바라면서 제32조 3항의 자조금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돈농가에서는 1992년도부터 임의자조금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의자조금제도로는 어려운 이 IMF의높은 파고를 해쳐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등 축산의 선진국에서는 의무 자조금제도가 입법화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 양돈에서는 단지 10%의 양돈농가가임의 자조금제도에 참여해서 소비홍보를 하고 있어서 너무 빈약한자금으로 제대로 소비홍보나 판매전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일 수출에서 정부의 보조도 한계에 부딪히는 현실에서 의무 자조금제도가 조성되면 대일수출의 홍보 및 판매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고 우리 양돈산업을 지킬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자조금제도가 현재 임의자조금제도에서 의무자조금제도로 입법화함으로써 우리 양돈농가가 세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수출전선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이 제도를 꼭 입법화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법제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법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본법 자체카 우리 농민들을 제압하는 법인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을 잘 영위해서 도시민들과 함께 잘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인지부터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자조금제도는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결정 및 기본법 제정 단계에서 좀 더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법 제정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좌 장 : 유상익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방청석 3(김성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실장)

농업경영체과 관련된 내용의 뒷부분에 가족농이 나와있습니다. 가족농을 정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농업경영체를 농업인이라고 규정했을 때 여성농업인은 제외되게 됩니다. 가족농을 경영체로 확실히 규정했을 때 여성농민이경영인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에서 여성농업인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농촌부 너자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정책들을 마련해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인력의 육성에 여성농업인 인력육성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좌 장: 김성숙 실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분 말씀하십시오.

방청석 4(천광균, 양계협회 이사)

앞에서 여러 학자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 정의를 보면 농업(축산업포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세가 농가소득에 거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항상 농업하고 괄호로 표현하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년전에 축산부지로 불법 적용된 것을 양성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관서에 가서 그것을 양성하려고하니까 농지법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지는 농가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아닌 사람이농지전용으로 하려는 것이 되고 보니 전용부담금 외에 농지대체조정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마련되는 법에서는 농업(축산업)이라 표기하지 말고, 농업・축산업 및 임업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32조의 자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축산단체에서 수년 전부터 법은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행력이 없습니다. 예 를 들어 양계분야에 일년에 사료로 쓰는 것이 약 370만톤 정도인데 과거부터 사료에다가 1원씩만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걷게 해 주면 농 림부는 자금 지원을 안해도 될 것입니다. 특히 양계부분은 산란기에 병아리 한 마리를 길러서 알 낳을 때까지 4,500~5,000원이 드는데 이 걸 노계로 팔 때는 작년과 같은 IMF 이후에는 200~300원에 팔았습 니다. 요즘엔 다시 올라서 1,200~1,300원하는데 이럴 때 축산인들을 보호해 주는 방법은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축산인 들을 도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돈 잔뜩 줘 서 집단농장을 만들어서 전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농장단지는 수 백 억원씩 정부자금을 갖다 쓰고서 지금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 새로 지원 받아야 하는 진짜 농민들 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자조금제 도를 만들어서 자조금을 내고 자기 본업에 충실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이 모법인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32조에 보면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바꿔서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로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자조금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주었으며 합니다. 예를 들면 양계분야는 계란보다는 사료에 1kg당 1원씩, 소의 경우 젖소는 우유납품에따라 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산자단체에 협조한 사람들은 자기 회비와 자조금을 내서 홍보 등을 하는데 그 이 외의 축산업자들은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내서 함께 운영해 나가야할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자체를 강제입법을 통해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방청석 5(김재호,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장)

농업의 비농업분야에 대한 기여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조금 약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요즘 FAO에서는 도시농업 문제를 새로운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본시책제2장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설정을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확장에 따라서 앞으로의 조금 있으면 농촌부분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부분이 자꾸 위축됨에 따라 도시의 확대로 흙으로 회귀하겠다는 인간의 본능, 도심속의 녹색공간 유지, 농촌전통문화의 유지·보존을 통해 도시민에 주는 기능, 도덕적 가치의 함량 등 이런 문제가 농촌섹터에서 도시 쪽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서 농업기본시책의 제8조를 신설하여 도시 농업개발 및 전통문화의 보존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전통문화의 보존도 제7조농업의 지역사회 개발 쪽에 다뤘는데 이것도 농업사회가 도시민에게

주는 쪽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 농업개발 및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농업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국민의 합의 를 도출하는데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 부가적으로는 저희분야에서 관련되는 조항인 농업과학진 홍조항인데 그 조항이 주로 벤처농업과 농림수산정보센터 두 조항만 제외하고는 농촌진흥법하고 꼭 같습니다.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본적 철학 및 농업과학촉진에 대한 내용만 선언적으로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앞으로 농촌진흥법을 농업과학기술촉진법으로 바꾸겠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법에 위임하는 것이 중복을 피하고 기본법의 모양도 바로 갖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농업・농촌기본법은 현재의 내용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분 말씀하십시오.

방청석 6(고은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김성숙 실장이 여쭈었던 가정농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안을 보면 농업경영체로 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의 기업농과 배치되는 개념의 가족농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해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림부의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릴 때 대다수의 농가인 가족농의 개념을 부부노동력을 중심으로 하고, 남편의 노동력은 full로 가동이 되고 부인의 노동력은 연간 250일 이상 정도의 전업적인 농업참여로 가족농이 생계와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여성이란 개념은이제 확실히 탈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대다수인 한 가족의 주체로서 여성농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농의 정의가 제대로 내려진다면 여성농업인의 위치가

좀 더 올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참여 할당제 또는 법인 중에 여성이 참여했을 때 Incentive를 준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정책을 실행할 때 여성 농업인의 참여를 극대화 할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일정 수준의 예산보조를 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수행의근거가 기본법에 명시되면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농정과 지방농정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어느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중앙농정만 있었고 지방농정의 개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막 시작되는 지방 농업의 특성상 중앙 정부의 일정 계획하게 유도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단위인 군 단위에서는 실제로 농업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기본법에 들어갈지 아니면 시행령에 강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과 기초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 말씀하십시오

방청석 7(전철원, 농어촌진흥공사 기금관리처)

제16조에 보면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농업경영종합자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금융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제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관련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사전심의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의 문제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

다. 사전심의는 컨설팅 제도를 우리가 잘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컨설팅만으로는 아주 부족합니다.

제 자신이 실제로 농업인들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를 일선에서 해봤습니다만 사후관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원된 자금이 얼마나 잘 쓰여지느냐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느냐하는 것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별사업 시행주체가 개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해도 큰어려움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금융지원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한다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종합금융제라는 것이 개별지원제도보다 더 효과가 있는지 효과면에서 볼 때 정말로 실용성이 있는 제도이고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인데 제16조2항에 보면 강제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제도를 개선・발전시키는 것은 좋으나 1항에 선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2~3항 이하는 시행령 등 하위법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고맙습니다. 다음분 부탁드립니다.

방청석 8(김남열, 대한곡물협회 전무)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32조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부분에서 3항의 정부는 농산물 판매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는 경우 정부는 농산물 판매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이나 가격지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통부분은 순수한 생산자단체만 담당하는 기능이 아니고 생산자단체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민간단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정부가 보조를 하고 다른 한쪽은 그런 지원이 없을 때 그것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라든지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유통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김남열 전문님 고맙습니다. 다음 분 말씀하십시오.

방청석 9(최태동, 식품개발연구원 식품경제팀장)

지정토론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농업이 더 이상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저장, 유통, 가공을 포함하는 복합 산업으로 개념이 변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해서 제6조의 구조개선 촉진 내용에서도 가공식품의 개발, 가공산업육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대비 농업정책 시책에서도 북한의 가공식품산업조사·연구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25조의 농업과학기술진흥 내용에서도 저장, 유통,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보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제28조 기술개발사업의 내용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 유통, 가공기술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5조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조항이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전통식품의 연구개발, 이 내용에 국한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통식품만이 아니고 일반 가공식품까지 개발·보호하는 내용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토론해 주실 다른 분들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방청석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진공에서 양은 선생님이 정주생활권과 생산기반조성, 농업경영종합자금제와 관련하여 두분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돈협회 윤지부장님과 양계협회 천지부장님 두분은 자조금제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지부장님께서는 축산업 및 축산인이 임업 및 임업인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에 확실히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민회 고은실 회장님과 김성숙 실장님께서는 여성 농업인이 남성 농업인과 똑인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치 못할 위험성이 가족농이라는 개념속에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걸 확실히 하자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고회장님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확실하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진청의 김과장님은 도시농업개발과 천통문화의 보존을 하나의 장을 만들어 독립을 시키고, 농업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내용은 자칫 농촌진홍법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확실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곡물협회 김남열 전무님께서는 선의경쟁을 하는 유통단체에도 보조금을 지불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말씀해주신 식품연구개발원의 최태동 선생님께서는 식품개발연구원과 연관이 있는 유통, 가공, 저장기술도 법안에 확실하게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하셨습니다. 방청석의 토론은 직접농업 각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피부에 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정토론자들 중에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로이신 김동희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다 못하게 한 것 죄송합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김동희(전 단국대 교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농촌지역개발이 있는데 그냥 농촌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농촌과 공동화 되어있는 농산촌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반 농촌지역에 대한 진홍과 과소지역 진홍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 분야는 과거의 내무부가 담당해 왔는데 앞으로는 통합해서 한 부처 에서 관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18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있는데 농지법 제3조에 보면 똑같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중앙농정과 지방농정의 5개년 계획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방 행정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그런 시대로부터 완전히 자율적인 시대로 바뀌는데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시·군단위, 도단위에 있어서 농업·농촌개발 5개년 계획은 하나의 지표적·지시적 계획의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토지의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현재는 잘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토지의 종합이용계획이 없으면 농지전용도 할 수가 없다는 조항도 하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법 조문이 없다보니 모자이크식으로 난개발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김재옥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재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제8조를 보면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을 하는 목적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 보면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나 와 있어서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친화적 농업육성 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확대에 목표를 두고 그 결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그런 쪽으로 조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산물 교역 및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제38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수입농산물의 안정성 때문에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내용이 이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다른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국내농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므로 수입농산물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문제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립니다.

좌 장: 지금 까지 3시간 30여분 동안 이렇게 저희 공청회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호 국장께서 저희들이 토론할 수 있는 근기를 주셔서 토론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셔서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덟분의 지정토론자께서 진지하게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 뒤쪽이 좀 불편하셨겠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아홉분께서는 특히 토론에 참여를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틀 후에 대전에서 지방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법이 마련이 될텐데, 지방에 있는 여러분들의 조직이나 친구 분들도 참여하셔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청회를 주최하는 보람이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공청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 셔서 저희 연구원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시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대전지역 공청회>

진행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박준기)

지금부터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위한 대전지역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종혁 수석연구위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좌 장: 서종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늘 공청회의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 30분 동안 주제 발표를 듣고 지정토론자를 중심으로 약 한시간 반 동안 지정토론이 있겠습니다. 지정토론이 끝나면 청중석의 토론 및 종합 정리하는 시 간을 가진 후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들어가기 앞서서 발표자와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발표를 해주실 농림부 이수화 농정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농연 충남도연합회 김연암 사무처장님,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박사님, 서명식 충남농업정책국장님, 성진근 충북대 교수님, 농수산물유통공사 이규성 충남지사장님, 이봉주 충남논산 연무농업조합장님, 농어촌진흥공사 최창균 충남부지사장님이십니다.

지정토론자께서는 십분 정도 토론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청석에 토론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토론을 하실 분들은 성함, 소속, 직책, 토론주제를

간단히 메모를 하셔서 진행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화 농정과장님의 주제발표가 있은 후 지정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한정해주시고 상황 설명이라든지 오늘 주제와 동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삼가주시기 바 랍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박사님부터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승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자료에 제시된 쟁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p.6 에 나와 있는 국내적 여건 변화와 관련하여 앞으로 국가와 민족형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도 농업 관련 종사자 이 외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쟁점3에 나와 있는 농업회의소와 농림수산정보센터 관련 조문이 기본법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회의소는 아직 설립도 되지 않는 기관인데 농업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에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림수산정보와 관련하여 많은 기관 및 민간단체가 이미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벤처농업 관련 조문을 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성 있는 바람 직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 는 내용은 벤처기업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 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벤처란 high risk - high return의 의미 를 갖는 것으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내용은 벤처기업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인을 상대로 자금지원을 할 경우 이들도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으로 국한시키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32조 제2항의 농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단체로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유통업을 대행하는 자에 국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의 세 단체가 아닌 경우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만약그렇다면 농업기본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 아닌지 생각되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회의소의 삽입 여부에 대해서는 별 도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진홍공사 최창균 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최창균(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장)

먼저 법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으로써의 역할을 생각할 때 기본법에 농지전용부담금 등 세부적 사항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관련한 철학과 기본방향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제시하는 것이 법체계가 매끄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업의 근간이 되는 농지 문제는 기본법에 당연히 언급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억제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법에 농지전용억제책을 제시해야 농지전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의 차등화도 제도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3조 농업재해에 관한 시책에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보험 등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기본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쟁점1의 제2장 농업·농촌기본시책에 정책기본원칙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별시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개별시책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과 관련해서는 식품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건강, 영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농업회의소, 정보센터 등 개별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기본법보다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농업인의 책무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농촌계획의 삭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량자급목표는 기본이념 부분에 기본이념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5조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하여 제31조 3항 정부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내식량 확보와 관련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6조 자금의 효율적 지원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경영체의 모든 단계를 심사,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전문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이규성 지사장님 부 탁드립니다.

이규성(농수산물유통공사 충남지사장)

제32조, 제37조의 정부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책 수행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신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 이봉주 충남논산 연무농협조합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주(충남논산 연무농협조합장)

생산자단체 육성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농업회의소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는 기본법에 제시하면서 대표적인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의 지원, 육성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협동조합 지원, 육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삽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쌀 농업에 대한 직불제와 관련하여 쌀 생산농가, 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 내용이 법안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쌀 농가는 농업진홍지역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상적 직불제 시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농업의 시행에 따른 공익적 기능과 조건불리지역의 생활 어려움을 고려하여 직불제 실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량범위를 식품으로 확대하는 것, 농업인의 책무조항을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농촌발전 계획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아직은 지자체가 농업을 위 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중앙 정부의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안보 및 자급율 목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적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연암 한농연 충남도연합회 사무처 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연암(한농연 충남도연합회 사무처장)

UR, WTO, IMF 등 농업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본법은 지나치게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새로운 기본법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여건 변화를 새로운 기본법이 잘 담아내기위해서는 직불제, 유통명령제, 농지보존 관련내용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농업법 형식을 참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1조 목적은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 되어야지 농업을 수단시하는 의미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경영인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하여 하드웨어적 측면만 강조하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량자급에 대한 목표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예산의 감소에 대하여 농업인들이 우려하고 있으므로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에 대한 내용과 농업관련 산업(종묘, 비료 등)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32조 농산물 가격안정은 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통명령제, 가격안정제 등 구체적 내용(출하조절, 폐기, 긴급유통명령제, 가격안정제 등 명시)을 법안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38조 관세조정, 산업피해 구제 등 기본적 조치를 담고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정부, 소비자. 농업인 등의 첨예한 대립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입관리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2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구체적으로 소득지원을 위한 직불제 내용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제43조 농업재해와 관련하여 인적과실로 인한 농업재해의 응급복구, 보상기준의 마련을 위한 근거법안의 삽입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의소와 관련하여 어려운 농업현실을 농업인이 자구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은 기본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김연암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길영 전농충남총연맹 사무처장님 부탁합니다.

이길영(전농충남총연맹 사무처장)

우선 법안 전반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본법은 개 방과 경쟁이 아니라 자급과 단결, 통일로 나아가는 철학이 담긴 농업 농촌기본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통구조 혁신은 포함되 어 있으나 가격과 소득보상에 대한 내용은 부적절하므로 보완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대비 농업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 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민단체, 정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 제정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농업인의 지 위와 관련하여 현재 농업인력이 고령화, 부녀화가되고 있으므로 여성 농업인에 대한 대책은 농업인력 분야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의 기본 원칙

이 기본 정책방향에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량의 범위를 식품과 영양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회의소와 관련하여 농업인의 힘을 응집시켜 나아가는 체계적 기관이 필요하며, 경제6단체로서의 위상과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에 포함시켜야 농업·농촌기본법이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민의 기본적 책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포괄적 계획 수립은 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식량 자급율의 제시는 법체계상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식량 자급과 농지보전을 천명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0조 가족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협업과 협동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규모화는 삭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4조의 내용은 기본법인지회사법인에 관한 법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5조 귀농은 IMF와 실직자에 의한 것인데 농업기본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노력이 있다면 도농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귀농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장 가격안정 및 자조금제도의 활용방안은 총론적 입장보다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용어와 관련하여 농촌 여성은 여성농업인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재해를 한해, 수해, 냉해와 함께 병충해, 인적 재해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농업에 대비하는 내용을 개별시책으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명식 충남 농업정책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서명식(충남 농업정책국장)

앞서 여러 분들께서 토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많은 부분 의견을 같이 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본법에 국내 토종의 보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 장: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진근 충북대 교수님 부탁 드립니다.

성진근(충북대 교수)

먼저 기본법은 대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1 의 농업농촌 기본시책은 제가 제출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쟁점2는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쟁점3 농업 회의소, 정보센터 등과 관련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쟁점4 농업인 책무조항 삽입은 찬성입니다. 쟁점5, 6은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재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쟁점7은 표현을 '육성시켜'로 바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시행령으로 돌려야 할 세부 내용은 기본법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농정의 일관된 목표가 법안에 명시되어 새로 제정된 기본법이 최소한 10년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개발은 행정자치부, 보사부, 건교부 등이 맡고 있는 분야 등 중복되어 있어 부처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촌과 도시가 다른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교통의 발전으로 도농간 구분이 없으므로 과거 방식의 농촌개발에 대한 페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기본 틀만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농촌개발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는 입장에

서 중앙정부의 계획 수립 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덟분의 지정토론자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보완설명을 이수화 농정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방청석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토의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방청석 1(박운근, 농어촌진흥공사)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내용에 유통질서라는 표현을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청석 2(유규형, 전북 농정과)

제49조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와 관련하여 농정시책 보고서 작성 규정은 민선 이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군 조직의 농정 분야는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삽입하므로서 일선 공무원의 업무량만 많아지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청석 3(안영식, 농업인)

토종 종자,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조항을 기본법에 분명하게 명시 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좌 장: 감사합니다. 지금 까지 긴 시간동안 저희 공청회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을 위해 발표를 해주신 이수화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덟분의 지정토론자께서 진지하게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 뒤쪽이 좀 불편하셨겠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세분께서는 토론에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공청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 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진행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박준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기본법」제정을 위한 대전지역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间随

전문가 간담회 토론 내용

间属

<1차 간담회>

1: 법안의 체계에 대한 토의

- 제1장 총칙 : 기존의 농촌기본법이나 농발법에 비해 표현이 추상 적임.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기존의 기본법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신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불명확함.
- 농지관리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둘 경우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원할한 식량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재검토 필요
- 자조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농업관련 모법(母法)으로써 기본철학과 목적을 명확히 하면서 선 언적 의미를 지녀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를 위하여 총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선언적으로 언급한 후 세부적인내용을 언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총칙 내용이 막연함. 여기에 농업분야의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 의지, 식량의 개념 및 식량안보 등의 내용이 명문화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기본법 제정에 임해야 함. 앞으로 가공 및 유통분야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순수 농업생산의 비중은 GNP의 5% 이하로 떨어질 것이므로 농업에 대한 전통적 개념(수동적, 희생적 의미의 농업)을 가지고 법 제정에 임하는 것은 불충분함.
- 경쟁력을 강조할 경우 농업의 특성상 경쟁력이 약하므로 모순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농업의 기본이념에 나타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 기본법이 담아야 하는 내용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의 기본법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농업회의소의 설립지원 내용이 농업기본법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함.
- 기본법의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기본법(안)은 모법임에도 개별법 내용까지 세세하게 포함하고 있음. 기본법은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선언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별 세부적 내용은 개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른 법개정이 불가피할 것임.
- 기본법은 기존의 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 유지하여 기본법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시행 등은 농발법 을 개정, 보완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기본법의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농업기본법은 모법임에도 모법에 개별법 내용까지 세세하게 포함되어 있음. -> 기본법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쳐야 함. 농발법의 내용이 기본법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농발법을 폐지하고 이 법의 세부내용을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오히려 농발법을 개정·보완 혹은 개별법을 제정하여 세부적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본법은 모법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함.
- 농촌복지, 수급안정, 식량안보 등에 대하여 일본의 기본법이 잘 언급하고 있으므로 참조할 것.
- 농업, 농림부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소비자, 대국민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예를 들면 식품산업의 경우 농외소득 측면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까지도 확대하여 접근해야 할 것임.
- 2000년대에 들어서면 농업생산은 1%에 불과할 것이지만 가공산 업의 경우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점을 고려하면서 법 제정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현재의 농림부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법을 제정하게 되면 졸속한 법에 불과하게 됨.

2. 법 조문에 대한 토의

(1) 제1장 총칙

- 총칙은 국민에 대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므로 제1조에 '식품'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함.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고'
- 제2조 농업, 농촌의 불리한 부분에 대한 보완(교정)이 필요함. 왜 농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기본법이 필요한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함.

(2) 제3조 정의

-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대한 내용은 제외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연 인, 단체, 법인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의 세부사항에서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되므로 앞에서 정의해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소 수의견)
- 정의 6 : 농산물 -> 식품으로 변경 검토 필요
- 농업의 개념을 전통적인 생산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농업관련 산업(agri-business) 측면에서 광의의 개념까지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의 개념을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구분 정리 필요
-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필요가 있음.
- 농업의 정의 : '농업이라 함은 농림축산업 및 그 관련산업으로 하

- 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영체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3)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안정적 성장과 발전'이라는 용어는 막연하므로 구체화시킬 필요 가 있음.
- 농업, 농촌뿐만 아니라 농민에 대한 책임 부분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수요자의 요구에 부응, 안정적 농산물 공급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농촌지역 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국가의 책임, 지자체의 책임, 농업인의 책임' 등을 구분하여 언급 하는 것도 검토

(4) 제2장 농업・농촌기본시책

- 제2장이 정책의 기본 목표의 의미를 가지므로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 생산, 경영, 인력, 경영주체, 소비보호, 협동조직 육성, 유통 등에 대하여 기본 시책만 언급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법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6조 및 제7조 내용은 농발법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생각되는데 제6조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특히 인력문제)
- 새롭게 제5조에 정책의 기본틀을 신설할 경우 제1, 2조의 기본목 표, 기본틀과 중복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지 기술적 문제가 있음.
- 성진근 교수의 안을 참조하여 부족한 부분, 제외된 부분을 추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2장은 기본틀 제시에 비중을 두고 정리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문 상호간의 중복을 피하면서 정리하는 방법이라 생각됨.

정책의 기본틀이란 어떤 원칙 하에서 농업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정부의 시장개입 억제, 농가의 의사결정에 대한 간접 배제 등), 즉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원칙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수급안정, 통일, 유통, 생산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틀이라 할수 없음. 현재의 법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분야별로 구체적 사업시책임.

기본틀의 한 예로 미국의 경우 농가의 의사결정 존중, 경자유전, 가족농 중심, 다다익선(생산물은 많을수록 바람직) 등 임.

제5, 6, 7, 8, 9조에 제외되어 있는 내용의 보완 -> 수급안정, 수출입, 가격안정, 통일정책, 농민소득, 가족농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사업시책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정책의 기본틀을 세운 후 현재 제시되어 있는 조문(5,6,7,8,9조)의 내용들은 이 기본틀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리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임.

제5조 앞에 정책의 기본틀을 추가

기본시책과 관련한 세부 내용간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구조개선, 환경문제, 소득안정 등에 포함되는 내용의 구분이 필요). 기존의 정책은 대응정책 수준에 불과해서 상황에 따라 자주 변화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임. 여건의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정책의기본적 원칙이 필요함.

기술개발, 가족농 보전, 협동조합, 소농보호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함.

농업내부에서는 시장지향과 관련된 논의를 하더라도, 농업외부에

대해서는 공익적 기능, 정부개입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의 법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었던 임업, 축산과 관련된 내용이 본 법(안)에서는 제22조에 1회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제2장에서는 원칙과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진근 교수의 안에 제시된 가족농 개념은 협의의 개념에 불과하므로 개선이 필요
- 가족농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우리 나라의 많은 농업법 인체가 실패했지만 가족농 중심의 농업법인체는 성공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토지소유 억제는 앞으로도 지켜져야 할 것임. 국가의 많은 재원이 투자된 토지를 주식회사가 소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주식회사가 농업발전을 위해 기여하는데도 농지의 소유를 막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제6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분하여 재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통과 관련하여 농산물 가공에 대한 내용 언급 필요
- 농촌지역에 대하여 기존 농민의 안락한 생활뿐만 아니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쾌적한 생활 공간 제공 등 미래지향적 접근 필요
- 정책의 기본 방향에 소비자 지향적 농업 내용의 추가 필요
-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의 수정 필요

(5) 제3장 농업구조개선

- 기본법은 제2장까지로 충분한 것 아닌가? 농업회의소, 후계자 육성 등 구체적 내용은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법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축소조정 필요
- 품목별 생산자 조직 관련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농산물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과 관련 유통조성기능(세제, 유통 정보, 수송, 교육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영농조합법인 관련 내용이 너무 길므로 축소 필요

제10조 2항 '창의적 경영혁신' 보다는 '지속적 경영혁신'이 바른 표현임.

제17조 농업회의소 관련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업단체조직 관련 내용으로 보완하여 협동조합, 품목별 생산자 조직, 농업회의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정부는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업단체의 설립·운영을 지원할수 있다.).

제16조 자금지원 관련 원칙이므로 별도로 독립시켜 제2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8조 : 1항의 강화 필요 -> '자원이므로'

농지전용부담금과 관련하여 농지의 전용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농림부장관은 농지전용을 억제하고'라는 표현 사용이 바람직함. 농지전용부담금 내용을 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농업용수관련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제2절 '농지의 보전 및 이용'을 '농업자원의 보전 및 이용'으로 조정하여 용수문제를 포함 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제3장 농업구조의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생산 및 경영'과 관련된 것이므로 3장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

제22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에서 축산, 임업에 대한 내용을 차별화 하여 구체화 필요가 있음.

임업분야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는 것이 필요 농업관련산업(농산물 가공산업, 관련산업,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제24조와 관련됨).

- '정보센터' 관련 내용의 조정(삭제) 필요

(6) 제4장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 제31조 삭제
- 제32조 4항 삭제
- 소비정책에 대한 내용 추가 하여 제33조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 제33조를 구체화(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 포함)하여 1항 유통기반, 2항 제도, 3항 조성기능으로 정리
- 제34조 농산물 품질, 소비자 정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
- '전통식품'을 '가공식품'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제7장 농업ㆍ농촌발전계획

- 제48조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만 나열되어 있음. 계획,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틀을 제시

(8) 기 타

- 제2장에서 언급한 환경친화적 농업, 통일대비 농업정책에 대한 내용이 세부내용으로 언급된 것이 없음.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추가 필요
- 제45조 지방농업, 농정 발전계획 2항에 시, 군 단위에 학계전문가 참석 관련 내용 추가
- 기반산업으로써 농업금융문제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9) 참 고(성진근 교수 안)제2장 농업·농촌 기본시책제5조 (정책의 기본틀)

1. 모든 생산정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화 실현, 소득균형을

- 위한 형평의 실현, 국내 부존자원의 최대활용 등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동기를 유발할 수 위한 직, 간접의 모든 시장조성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 2. 일정규모의 농업생산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지, 토양, 물, 산림자원 등을 보존, 복구, 개발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3. 농촌지역의 인적 자원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동기 유발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영양공급, 주택, 보건과 휴양 등 분야에서 양질의 기회를 제공해줄 농촌의 환경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4. 한국 농업경영주체의 중심단위로써 자작적 소유에 의한 가족농 (The owner operated family farms)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 야 한다.
- 5.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교육과 전시 등의 수단에 의한 농업기술과 경영방법의 계속적인 개발과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6. 농업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다같이 보호,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산물유통 시스템과 이에 관련된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 가야 한다.
- 7. 소농경영이 지배적인 한국농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용 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각종 농업서비스를 획득, 이용하는 과정에서 협동조직의 육성을 통하 여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

<2차 간담회>

1. 법안의 체계에 대한 토의

- 황정인 교수의 '농업,농촌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자료 참조
- 농업·농촌기본법은 실체법이 아닌 기본법이 되어야 함. 현재의 법안은 실체법이 되어있음.
- 농발법을 살리고,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써 유지되어야 함.
- 농업의 범위를 현재처럼 한정시켜 놓고 나갈 경우 앞으로 10년후에는 농업의 생산력이 GNP의 5%에 불과하게 되어 농업의 입지가 좁아지므로 농업관련사업을 농업에 포함시켜서 나아가는 것이바람직함.
- 농발법을 폐지하고 기본법에 농발법의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기 본법의 모양이 방향을 잃고 있다고 생각됨.
- ~ 일본의 농업기본법이 범한 잘못을 한국에서 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임(일본의 농업기본법에 대한 자료 참조), 일본의 경우 규모의 문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미래를 담지 못함.
- 농업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 분담 필요. 다른 기본법에는 시도자사의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농업·농촌기본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음.
- 기본법을 만드는 기본 철학이 공익적 기능, 환경보전, 경제적 효율 성 등 혼재 되어 있어서 오히려 철학이 없는 느낌이 듦.
- ~ 도농간 교류, 농촌의 역사, 문화 전통 등의 사회적 가치의 유지 차 원의 내용이 부족함.
- ~ 농민의 재교육, 산학협동체제 구축, extension service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 농업, 농민에 대한 정의를 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가공, 상품화 등 정부가 농발법에서 정부가 강조했는데 내

용들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지나치게 경제주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자승자박하는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음.

법(안) 제목을 '농업기본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여성농민의 지위에 대한 고려

최소한 10년 앞은 내다보고 법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

기본법 성격에 충실해야 할 것임. 21세기 선진농업 비전제시, 제도적 뒷받침, 제도개혁의 실천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너무의욕이 지나치다 보니 기본법의 성격에서 벋어나 있음.

농촌복지, 농민복지 부문이 법안에 너무 소외되어 있음.

총론에서 식량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각론에는 너무 내용이 부족함.

식량의 자급도 뿐만 아니라 식생활의 패턴 변화(쌀 소비 -> 육류 소비)에 대응하여 식용곡물뿐만 아니라 사료곡물을 중심으로 토 지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안이 산만함.

조문이 너무 긴 것들은 줄여서 재정리해야 함.

일부 조문은 너무 관념적인 반면 일부 조문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기본법이라 하여 선언적 의미만을 담을 경우 활용의 문제에 직면 하게 되어 고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식품의 안정성 문제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는데 훨씬 역할이 큰 협동 조합, 생산자단체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국가, 지자체, 정부, 농림부장관 등 혼재되어 있는 용어에 대한 정리 필요

2. 법 조문에 대한 토의

- 제1조 '역할과 기능' -> '역할, 기능 및 범위'로 수정
- 제2조 '발전을 유도하여' -> '발전하여', '전통과 문화' -> '역자와 민속문화'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제3조

-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 5항 '산촌'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함.
- 3항과 4항의 균형을 위해 3항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4항의 협동조합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 제4조.

-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은 법조문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함.
-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제6조

- 농지의 개발, 보전, 이용 측면을 고려해야 함
- 기본원칙에 효율성과 공익성이 혼재 되어 있어 내용이 어색함
-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0 제7조

- '경쟁력'이라는 용어는 농업에서는 부적합한 용어라고 생각되며 '생산성' 측면 강조 필요
- 역사와 전통문화의 보전 측면 강조 필요

○ 제8조

- 도시, 농촌간의 문화교류 -> 도시, 농촌간의 '교류'
- '농촌의 다양한 산업발전' ->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
- 쾌적성과 산업발전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쾌적성' 내용은 삭제

- 제목을 '농촌지역 개발 및 전통문화의 계승'으로 수정
- 제12조
 - 후계자의 개념: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 제14조
 - '5인이상으로' 등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 제17조
 - 자금지원방식의 개선 -> 지원방식만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제18조
 - '농업회의소'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행령에서 처리
- 제19조
- 2항은 제20조로 옮겨서 재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효율성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념에 관한 것이므로 19조에 두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제21조
 - '우량농지'라는 개념은 애매함.
- 제23조
 - 조문의 수식어가 너무 길므로 재정리 필요
- 제24조
 - '경영자산의 유동화' 삽입
- 제26조
 - '보급체계의 구축'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
- 제27조
 - 벤처농업의 개념 명확화 필요
- 제28조

- '전통지식' 보다는 '전통문화, 전통기술' 등으로 구체화 필요
- 제31조
 - 지역을 삭제하고 '농업, 농촌의 정보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구조의 고도화'의 의미가 무엇인가?
- 제33조
 - 2항 유통업을 대행하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함.
- 제34조
 - 제목 '농산물 유통 개선'으로 변경
 - 3항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로 수정
 - 유통금융, 유통교육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2항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41조
 - 3항 숙박시설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휴양시설로 수 정
 - 1항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43조
 -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재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0 기 타
 - 선언적 측면이 부각된 기본법이 되어야 함.
 - 법률전문가와의 협의 필요
 - 주식회사 관련 조항 신설 필요
 - 법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

<3차 간담회>

1. 법안의 체계에 대한 토의

- 기본법의 역할이 헌법적 역할 수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농업기본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합치므로써 기본법이 실정법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해서 기본법이 필요함. 장관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변화하게 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함.
- 농업기본법은 기존의 53개 법률의 상위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과연 현재의 개정안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일본은 법안의 사 문화를 막기 위하여 식량자급률 명시여부, 직불제 문제 등의 법률 에 명시하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구속력이 있 고, 시행력이 큰 법안의 마련이 필요함.
- 기본법에 개별법이 있는 것은 구체화하지 않고, 개별법이 없는 것은 구체화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음. 개별법이 없는 경우 다음에 개별법을 만들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음.

2. 법 조문에 대한 토의

- 제1조 법의 기본이념 : 내용이 막연함. 농업, 농업인, 농촌을 구체 적으로 언급하면서 법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해야 함.
 - 제5조 농업정책의 기본 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문화할 필 요가 있음.
 - 제3장의 내용은 개별법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진근 교수(안): '이 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인 농업과 국민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농촌을 발전정책을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 농업=농촌이 아니므로 농업과 농촌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제2조가 너무 길므로 큰 의미의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제5조(기본원칙)

- '.....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로 표현 조정
-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연차보고서의 기본적 취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제39조에 포함)
- 주술관계가 모호하므로 주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 제6조(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재정리
 -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서 식량의 자급수준 유지를 농지보전과 생산기반 확보, 비축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것이 자급율과 연결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수입농산물 등 솔직한 표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식량안보 등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단순히 한 조문만으로 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시책이 언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국제협력 부분을 분리하여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됨.

- 소비계획, 농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정부의 정책시행 자의성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정한 혹은 합리적인 자급수준이라는 용어는 애매하며 자의적 이어서 설득력이 없음.
- 국내생산과 안정적 수입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식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함.
- 국내, 해외농업개발수입, 비축 등에 대한 문제 언급 필요
- 국내생산능력 극대화, 토지이용계획, 적정수준의 공공비축, 소비계획 등 공공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문화의 계승)
 - 국가와 정부의 정의가 무엇인가?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 농업경영주체의 중심단위는 가족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제1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제1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 귀농자에 대한 내용 포함 필요
- 제15조(영농조합법인), 제16조
 - '5인이상'이라는 용어는 설립에 대한 절차법 내용이므로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3항을 없애고 1, 2항으로 조정하여 포괄적인 내용으로 재구성 필요
-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재정리 필요
- 제20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 '국가경제'표현을 '국민경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 제21조, 제22조(농지의 보전)
 - 제21조를 보면 농지전용을 허용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제23조(농지전용부담금)
 - 보칙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4조(농업생산기반의 정비)
 - 농발법의 내용을 살리려다 보니 불필요한 내용이 많음.
 - '농지의 이용도 증진'은 표현이 어색함.
- 제28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 벤처농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첨단농업이라고 표현하 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농업과 관련한 벤처산업'으로 수정 .
- 제38조(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 대외통상과 국제협력을 구분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처리
- 제40조(농산물의 수입관리)
 - 1항 : 수입억제
 - 2항 : 안정적 수입선 확보로 재정리
- O 제41조(농촌지역개발시책 수립)
 -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문제에 대한 규정 필요
- 제43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조건불리지역 지원 등 구체적이고 힘이 실린 내용이 담길 수 있 도록 재정리
- 제44조(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 43조(11조로)와 44조(경영안정 관련 장)를 다른 장으로 분리하 여 정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제45조(중앙농업, 농촌개발계획)
 - 정부의 계획이 왜 필요한지 의문임. -> 정부의 계획은 결국 물량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금 발생 등의 역기능이 나타나게 되므로 오히려 독소조항이 될 수 있음.
- 제49조(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 4조 3항에 처리하는 것 검토 필요
- 일본 농업법의 시사점 도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본법의 사문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검토 필요

토론참가자 명단

<서울지역 공청회>

• 사 회 자 : 박상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 김정호(농림부 농업정책국장)

• 토론자: 김동희(전 단국대 교수)

김완배(서울대 교수)

김재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종수(농협중앙회 조사부장)

조성우(전국농민회총연맹 상임부의장)

황민영(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

(이상 가나다 순)

<대전지역 공청회>

• 사 회 자 : 서종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주제발표 : 이수화(농림부 농업정책과장)

• 토 론 자 : 김연암(한농연 충남도연합회 사무처장)

민승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서명식(충남 농업정책국장)

성진근(충북대 교수)

이규성(농수산물유통공사 충남지사장)

이길영(전농충남총연맹 사무처장)

이봉주(충남논산 연무농협조합장)

최창균(농어촌진흥공사 충남부지사장)

(이상 가나다 순)

<1차 전문가 간담회>

• 사 회 자 : 성진근(충북대 교수)

● 토론자: 권용대(충남대 교수),

김경량(강원대 교수)

김완배(서울대 교수)

김철호(충남대 교수)

노재선(서울대 교수)

서종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수화(농림부 농업정책과장)

이정재(서울대 교수)

이태호(서울대 교수)

조석진(영남대 교수)

조웅재(식품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 가나다 순)

<2차 전문가 간담회>

• 사 회 자 : 서종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토론자:고영곤(농협 가락공판장장)

권원달(충북대 교수)

김완배(서울대 교수)

이수화(농림부 농업정책과장)

이태호(서울대 교수)

이호철(경북대 교수)

장재우(전북대 교수)

(이상 가나다 순)

<3차 전문가 간담회>

• 사 회 자 : 성진근(충북대 교수)

• 토론자:고영곤(가락공판장장)

김정호(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박진도(충남대 교수)

서종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수화(농림부 농업정책과장)

이정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찬길(건국대 교수) 한두봉(고려대 교수)

(이상 가나다 순)

연구자료 D135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찍은날 1998. 11. 25. 펴낸날 1998. 11. 30. 발행인 박 상 우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737-210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圆廊